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연구책임자 | 김수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법에 대한 인식과 형사 관련 법제	7
1. 법에 대한 인식	9
2. 북한의 형사 관련 법제	16
III. 북한의 범죄관, 형벌 및 사법기관	31
1. 범죄관과 형벌 및 형사처리 원칙	33
2. 사법기관과 형사 관련 당사자	52
3. 유사사법제도	67
IV. 위법행위 형사처리 절차	77
1. 수사·예심 및 기소	79
2. 재판	86
V. 형사처리 적용 실태	97
1. 수사·예심	100
2. 재판 및 집행상의 실태	112
3. 강제노동 적용 실태	122

VI. 결론: 평가 및 향후 과제	131
참고문헌	14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47

표 목 차

<표 II-1> 북한 형사관련 법제 변천 현황	20
<표 II-2> 주요 사안별 형법 개정 내용 비교	28
<표 III-1> 1987년 반국가범죄와 2004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요약 비교	36
<표 III-2> 2004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조항별 형벌	38
<표 III-3> 형법 개정 시 형벌의 변화	41
<표 III-4> 구금시설에 보내지는 범죄	43
<표 III-5> 사회적 교양처분	45
<표 III-6> 인민보안성 형사처리 관련 부서 및 업무	53
<표 III-7> 형사처리 단계별 관할 기관	61
<표 III-8> 범죄별 관할기관	62
<표 IV-1> 형사처리 중 구류 기간	83
<표 IV-2> 재판소의 관할대상	86
<표 V-1> 사회안전단속법 단속대상과 로동단련형 적용 범죄 유사조항 비교	127

I

서론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식량난으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탈북행렬이 이어지고 이들로부터 북한인권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비참한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 등 저명한 국제인권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를 통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먼저 1997년,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에 걸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나아가 금년도 제60차 유엔 총회에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북한은 자신이 당사국인 국제인권 규약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체적인 인권규약별로 북한인권 상황이 유엔인권전문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인권문제는 공론화의 단계를 넘어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새터민들의 증언과 인도적 지원과정에서 북한인권실상이 알려지면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미북한인권위원회 데이빗 호크의 『감춰진 수용소』(Hidden GULAG), AI의 새터민, 공개처형 특별보고서, 좋은벗들의 『북한식량난과 인권』 등 NGO의 실태보고서, 새터민의 증언집 등이 발간되어 왔다. 그렇지만 인권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인 북한인권실태보고서는 여전히 총론적인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분야별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총론적으로 북한인권실

태의 전체상을 조망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보고서를 병행하여 발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자유권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시민적 권리 실태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그 동안 정치범수용소, 로동교화소, 로동단련대 등 수용시설의 실태, 공개처형,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고문 등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는 보고서들이 발간되고 있다. 또한 수기 형태의 새터민 증언들이 공개되어 왔다. 그런데 앞으로 인권유린의 전체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형사 관련 법률 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87년 형법을 대폭 정비한 이후 지속적으로 형법을 개정하여 오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와 북한사회 내부변화를 고려하여 2004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재판소구성법, 변호사법, 판결·판정 집행법, 검찰감시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형사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에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어떠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어떠한 형사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지 조사·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¹ 따라서 인권유린의 전체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처리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 사법제도 상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한

¹ 북한법연구회, 『분단 60년: 북한 법의 어제와 오늘』 (광복 60주년 기념 통일대비 학술대회 논문집, 2005);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 (서울: 법무부, 2004) 등에서 북한 법의 분야별 변화와 북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해설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로는 법원행정처, 『북한 사법제도 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 연구』, 연구보고서 92-23 (1994) 등을 들 수 있다.

형사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적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일반 법제도 및 남한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지만 인권실태 파악이라는 목표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² 우선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형사처리과정을 드러내는 데 연구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형사처리 과정에서 법과 정치의 관계 및 법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법 관련 조직들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법률을 집행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법과 정치와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시기별 변화상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법과 실제 적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토대로 법과 정치와의 관계, 법에 대한 인식, 그러한 인식을 반영한 형사법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에서의 범죄관과 형벌 등 처벌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제2장에서 살펴본 법과 정치의 관계 및 법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형사처리 원칙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위법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법조직 및 상호간의 관계,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 등 구체적인 형사처리 절차에 대해 관련 법규정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형사처리 절차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새터민의 증언, 실태보고서, 새터

²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비교에 대해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엮음, 『남북한 법제 비교』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3);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서울: 법무부, 2005); 김일수,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 『북한법률행정논총』, 제7집 (1989); 최중일,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비교,”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7집 (1990) 등의 업적을 참조할 것.

민 수기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입국 새터민들의 탈북 시점을 고려할 때 1차적으로 2004년 개정 이전의 법률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형사처리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1999년과 2004년 법률간 조문의 차이를 분석하고 증언을 통한 2004년 개정 이전의 적용실태를 살펴본 후 개정 형법을 기준으로 할 때 앞으로 실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법에 대한 인식과 형사 관련 법제

1. 법에 대한 인식

가.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한 인식

법률상으로 규정된 형사처리절차가 북한 사회에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며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는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법 제정에 대해 위대한 수령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창시한 주체의 법사상과 이론을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북한사회에서 법의 기능과 그 해석의 근간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형법학자들은 1958년 김일성의 “전국, 사법일군들 회의에서 한 연설”을 토대로 법과 정치의 관계와 법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은 동 연설에서 기본적으로 법은 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입니다. ... 법은 정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에 복종되어야 하며 그것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우리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모든 정책을 내세웁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당입니다. 우리 당이 우리 혁명을 령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 당의 령도를 떠나서 법에만 복종하겠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법에 복종하려는것이 아니라 법을 외곡하는것입니다.³

법은 정치의 표현으로서 정치에 종속되어 있으며, 당의 영도를 통해 법을 인식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법이

³ 김일성,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국, 사법일군들 회의에서 한 연설, 1958년 4월 28일),”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21.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은 ‘법에 대한 정치의 규정’이라는 법과 정치와의 상호관계에서 연유하고 있다. 사회주의 법은 당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로서 당의 정책을 ‘준칙화’, ‘규범화’하여 사람들의 행동준칙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법은 정권을 쥔 계급의 계급적 의사의 표현으로서 ‘정치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지배계급의 조직적 의사의 표현’이다. 법이 정권을 쥔 계급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계급적 의사의 가장 집중적이며 직접적인 표현인 국가의 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국가정책은 수령의 영도를 받는 노동계급의 당의 정책으로 법은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⁴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법에 대한 인식 속에서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형법의 기능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 북한 형법학자들은 형법의 기능에 대해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수령체제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낡은 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계속 매진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해 반혁명세력, 반사회주의세력에 대해 무자비하고도 철저하게 진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1980년대 북한에서는 북한에 수립된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며 혁명위업의 실현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자들을 진압하고 사회주의제도의 공고한 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국가가 제정한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규정하고 있다.⁵

⁴ 심형일, “사회주의법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위력한 수단,” 『근로자』, 1985년 제11호 (통권 523호) (평양: 근로자사, 1985).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당을 정치적으로 보위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보위하고 보장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의 본질은 사회주의 체제를 보장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진압하는 한편, 인민들의 사상을 교양·개조하여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교시와 당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형사소송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 인민대중의 주권을 잡은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보장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힘 있는 무기라는 데 있다. 1980년대까지 범죄의 처벌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인권침해를 막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영도 아래 범죄의 형태를 띠는 적대계급들의 반항과 낡은 사상 잔재의 침해로부터 주체의 혁명위업을 보위하고 그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본질적 임무가 지속되고 있다.⁶

이상에서 보듯이 1980년대에 발간된 형법, 형사소송법 서적에서는 김일성의 연설을 토대로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적에서 보듯이 1950년대 김일성의 인식이 1980년대까지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1982년 김정일 문건으로 발표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를 시발점으로 법을 정비하는 등 제도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본격적인 법제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른바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상이나 말씀 그리고 지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제의 상당부분을 법제화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⁵ 김근식, 『형법학 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pp. 5~6.

⁶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pp. 11, 17, 48; 이백규,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 『분단 60년: 북한 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에서 재인용.

있다. 일반적으로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그리고 당의 지시가 법률을 대신했을 때와 현 상황을 동일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990년대 이후 교시나 말씀 그리고 지시를 법제화하여 그 법률의 적용과 집행을 중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⁷

1990년대 이후에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한다는 체제 수호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서의 법에 대한 기본 인식은 유지되고 있지만 인권적 요소를 반영하고 법제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본 틀 내에서의 변화는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북한의 인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는 법은 당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당의 정책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인식은 법의 해석과 집행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진적으로 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의 령도를 받지않고서는 법을 옳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⁸

법이 국가 정책, 특히 당 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⁷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1990년대 북한의 법령 정비에 대해서는 장명봉, “김정일체제하의 법제정비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참조.

⁸ 김일성,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p. 221. 당의 영도 원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고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있기 때문에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당의 영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형법규범의 해석이란 형법 조문 속에 담겨져 있는 당 형사정책의 기본 요구와 의도 및 기본정신을 밝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법조문을 통하여 당과 국가가 설정한 목적과 당이 해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⁹ 이러한 형법 규범의 해석과 적용개념을 북한 형법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 교시에서 도출하고 있다.

우리는 법조문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떨어져서 법의 기본정신을 외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¹⁰

이와 같이 형법 조문 속에 담겨져 있는 수령과 지도자의 사상과 의도, 당 형사정책의 기본정신을 모르고서는 형법을 이해하고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급적 원칙의 관철을 통하여 법의 해석과 적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오직 법을 우리 당이 요구하는 계급적립장에서 다시말하면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립장에서 정확하게 해석하며 적용하라는것을 강조할 따름입니다.¹¹

이러한 김일성의 방침은 김정일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논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950년대 김일성 교

⁹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 (서울: 법무부, 1990), pp. 84~85.

¹⁰ 김일성,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p. 222.

¹¹ 위의 글, p. 221. 계급노선의 견지는 “국가는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제12조)고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김근식, 『형법학 1』의 제1장의 제목이 ‘공화국 형법의 계급적 본질과 사명 및 과업’으로 되어 있다.

시를 통해 정립된 형법 적용에서의 계급적 원칙은 1980년대까지 기본 인식이 견지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서 당적, 로동계급적 입장, 국가적립장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주의법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인것 만큼 반드시 당적, 로동계급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사회주의법의 계급적본질을 옳게 인식하고 당과 혁명의 이익,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옳게 해석하고 적용해나가야 하겠습니다.¹²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계급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사건 취급처리에서 계급적원칙을 지킨다는것은 발생한 사건을 로동계급적립장, 혁명의 이익을 고수하는 립장에서 심의하고 처리한다는것을 말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처리에서 계급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 법 집행에서 좌우경적 편향을 극복할 수 있으며, 둘째, 적과 우리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며, 셋째, 혁명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 “반혁명적행위를 한자들에 대하여 계급적으로 옳게 갈라보고 처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반혁명행위자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적대계급 출신으로서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의식적으로 범죄를 감행한 자들이다. 둘째, 기본계급 출신으로서 낡은 사상에 물들어 나

¹²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42.

쁜 짓을 한 사람들이다. 셋째, 반혁명분자들에게 이용당하여 본의 아니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이러한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회주의 제도에 악의를 품고 의식적으로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일말의 자비심도 베풀지 말고 엄격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계급 출신으로서 낮은 사상에 물들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반혁명분자로 처리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교양 개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¹³

이러한 계급적 원칙들은 사회안전기관(현 인민보안성)의 활동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안전사업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지켜야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근본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할수 있으며 온갖 비로동계급적요소를 철저히 극복하고 당과 수령, 국가와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옹호보위할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부문에서는 언제나 로동계급적원칙을 지키고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안전일군들은 사회안전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적립장에서 분석판단하여야 하며 계급투쟁에서 잠시도 해이되지 말아야 합니다.¹⁴

그리고 당적·노동계급적·국가적 입장에서 북한형법을 정확히 해석·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당의 형사정책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정치사상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¹³ 김정일, “사법경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사법경찰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317~318.

¹⁴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사회안전일군들을 키워 내자 (창립 45돐을 기념하는 사회안전부정치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1월 20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44.

¹⁵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 p. 87.

법을 집행하는 데는 반드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과 사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법이 바로 집행될 수도 있고 잘못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¹⁶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계급적 입장에서 범죄와 위법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유는 형사제도의 확립보다는 당과 수령, 국가와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들은 후술하듯이 2004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 따라 상당부분 인권적 요소가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 북한의 형사 관련 법제

가. 형사법 제도의 형성과 변천

1945년 10월 28일 소련 군정 하에서 「5도 행정국」이 조직되고 산하 10개국 중의 하나로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사법국」이 설치되었다. 사법국은 사법분야에 대한 사회주의적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재판소와 검찰소의 조직, 근거법령에 관한 일련의 포고를 발하였다. 우선 사법국은 1945년 11월 16일 사법국 포고 제2호로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을 제정·공포하였다. 곧이어 1945년 11월 23일 「북조선사법국」 포고 4호로 「재판소조직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적인 재판체계와 복심에 기초한 2심 재판심급과 재판소의 구성과 관할 등의 내용이 규정되었다. 그리고 인민재판

¹⁶ 김일성,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p. 222.

소와 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는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인민참심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재판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1945년 11월 27일 사법국 포고 제5호 「검찰소 조직 급(及) 설치에 관한 것」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재판소 체계에 상응하여 시·군 인민검찰소, 도검찰소, 북조선검찰소로 이루어진 통일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¹⁷

1946년 2월 8일 임시 주권기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산하 조직으로 사법국이 재조직되었다. 1946년 3월 6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제4회 회의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이 채택·공포됨에 따라 사법국은 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고 각 재판소, 검찰소를 통일적으로 지휘·감독하게 되었다.¹⁸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최고인민회의는 1950년 3월 1일 재판소 구성법, 3월 3일 형법, 형사소송법을 채택,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포고, 규정 등의 형태로 규율되던 사법제도가 법률의 형태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¹⁹ 그리고 1961년 8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기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실시하였는데, 최고검찰소, 각 도(시) 검찰소, 지

¹⁷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p. 74~78;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성남: 세종연구소, 1994), pp. 37~38.

¹⁸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 79.

¹⁹ 1950년대 북한이 형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형법학자 심현상은 1950년 형법에 대해 “선진 소련의 립법과 실무를 참작하여 내각이 제출한 형법전 초안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으로 채택하였다”고 소련법의 영향을 기술하고 있다. 심현상, 『조선형법해설-총칙』 (평양: 국립출판사, 1957), p. 51;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 p. 9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소련의 영향에 대해서는 김일수, “구소련 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북한법률논총』, 제9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등의 업적을 참조할 것.

구, 시, 군(구역)검찰소로 검찰기관체계를 구성하고 검찰소에 검사와
 고급예심원, 상급예심원, 예심원으로 구분되는 예심원 제도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검찰기관 일군들에 대한 교양, 법령해설, 범죄의 미
 연방지, 범죄자들과의 투쟁,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
 적 권리와 생명재산의 보호, 당과 정부정책의 정확한 집행의 보장, 법
 령집행에 대한 감시 등을 검찰기관의 임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신
 소, 청원에 관한 규정」과 「신소사업처리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1968. 10. 24)를 제정·실시하였다.²⁰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
 회주의헌법이 채택되면서 제10장에서 ‘재판소 및 검찰소’에 관한 규
 정을 명문화함으로써 헌법 차원에서 북한의 사법제도 및 사법조직도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혁명의 기치 아래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1974
 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형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을 법전 형식으
 로 채택하여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은 사회
 주의혁명의 전개 단계에 대한 북한당국의 평가와 관련이 있다. 과거
 민주주의혁명단계와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는 착취계급의 청산을 위
 한 계급투쟁이 진압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혁
 명완수단계에서는 계급투쟁의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교양
 과 법적 통제의 결합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법
 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위대한 수령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정치적으로 보위하고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노선과 정
 책을 옹호 관철하여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진취물을 온갖 범죄적

²⁰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p. 94, 103; 세종연구소, 『북한법 체계와 특색』,
 pp. 44, 53.

침해로부터 보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¹

그리고 1976년 1월 10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재판소구성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6년 3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또한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지방주권기관구성법」이 채택되어 하급 재판소 판사의 선출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법 관련 법률을 대폭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고 있다. 검찰감시법(1985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변호사법(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 판결판정 집행법(1997년 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0호로 채택), 형민사감정법(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호로 채택)을 채택하는 등 사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하여 오고 있다. 특히 여전히 정치에 대한 종속적 성격은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요구와 북한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법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오고 있다. 그 현황은 <표 II-1>과 같다.

²¹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p. 278;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pp. 109~110.

<표 II-1> 북한 형사관련 법제 변천 현황

구분	제정·개정 현황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 -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 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 - 1995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로 수정 보충 - 1999년 8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로 수정 -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 보충
형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 - 1954년 6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 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 1995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9호로 수정 보충 - 1996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7호로 수정 보충 - 1997년 9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5호로 수정 보충 - 1999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96호로 수정 보충 - 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 보충
재판소구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 1998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2호로 수정 보충 -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 보충
변호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

구분	제정·개정 현황
판결판정 집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0호로 채택 - 1997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3호로 수정 -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 보충
검찰감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 1997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8호로 수정 보충 -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 보충
형민사감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호로 채택
사회안전 단속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2호로 채택 - 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 보충
신소청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6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0호로 채택 -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보충 - 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나. 형법의 사명에 대한 인식과 변화

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형사처리절차 및 적용실태를 평가하고자 할 때 형법의 사명에 대한 인식, 법조문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73년에 발간된 『정치사전』에서는 형법에 대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며 그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화국 형법은 우리 사회주의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공화국 형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법률 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당 사법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하나로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소수 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이다. 공화국 형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과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와 사회주의전취물을 원수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한다...공화국 형법은 우리당의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원수와 우리 편을 옳게 갈라내어 적대계급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낡은 사상잔재를 버리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는 원칙,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원칙 등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온갖 범죄의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공화국 형법은 전체인민들에게 원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며 그들을 준법의식으로 교양하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²²

이상에서 보듯이 형법은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호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법은 계급노선에 따라 처벌 방식을 엄격하게 구분·적용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며, 계급원수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준법의식을 고양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법 개정과정에서 형법의 사명, 정치적 성격의 범죄 등은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가?²³ 먼저 형법의 사명에 대한 규정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70년대 『정치사전』에 규정된 형법의 사명에 대한 인식은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되어 1975년

²²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249.

²³ 형사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김일수, “북한 형법상 형사정책의 방향과 그 변천,” 『북한법률행정논총』, 제10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를 참조할 것.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형법에 반영되고 있다. 1974년 북한형법은 5개 편 17개장 2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974년 형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이라는 편을 신설하여 노동당의 형사정책 집행에 협력하는 무기로서의 형법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1974년 형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보위하고 공화국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며 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데 있다”(제4조)고 형법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74년 형법에서는 주석의 보위와 주체사상의 일색화, 당 노선과 정책의 옹호 관철 등 직접적으로 정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1987년 2월 개정되는 형법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87년 형법은 8개장 16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987년 개정 형법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성격이 강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편’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제1조)고 형법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철저한 진압을 주된 임무로 삼았던 ‘반혁명범죄’가 ‘반국가범죄’로 죄명이 바뀌었다. 아울러 「행위시법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형벌의 종류를 정리하여 사형, 노동교화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²⁴ 이와 같이 1987년 형법부터 직접적인 정치적 표현을 삭

제하고 조항들을 긍정적으로 재조정하고 있지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한다는 정치적 수단의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²⁵

1980년대 북한 형법학자들도 북한형법의 근본사명은 북한의 최종 목적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 실현을 담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⁶ 형법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 사회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하게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혁명적대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낡은 사상 잔재가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계급투쟁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명을 지니고 제정된 무기가 북한형법이라는 것이다.²⁷

정치에 대한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기본 틀은 2004년 개정형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범죄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04년 개정형법에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제1조)고 형법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²⁸ ‘범죄와의 투쟁’이라는 정치적 색채 대신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

²⁴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p. 110~111.

²⁵ 1999년 형법을 개정하였지만 그 때까지 1987년 형법의 사명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²⁶ 김근식, 『형법학 1』, p.11.

²⁷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 p. 51.

²⁸ 중국형법은 다음과 같이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형벌을 사용하여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함으로써 국가안전을 보위하고 인민민주독재 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집단이 소유하는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개인의 소유재산, 공민의 인신에 대한 권리, 민주적 권리와 그 밖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 경제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제2조).

로 세워'라고 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 중심으로 개정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성격의 범죄에 대한 규정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74년 형법에서는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일반원칙' 편을 두고 있고 '반혁명범죄', '일반범죄', '군사상의 범죄'를 엄격히 구분하는 장과 절을 두어 범죄의 특수성에 따라 형사처리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혁명범죄는 그 본질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빼앗고 유린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낡은 착취제도를 복구하려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한다. 반혁명범죄는 1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혁명적 태업죄(제61조), 반혁명범죄 은닉 및 불신고·방임죄와 같은 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제65조, 제66조)를 제외하고는 법정형이 모두 사형 및 전재산 몰수의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다.²⁹

이러한 인식은 1980년대 중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86년 발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제정사』에서 사법기관의 1차적 기능과 역할은 "계급적 원수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더욱 다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⁰

그런데 1987년 형법에서는 '반혁명범죄'가 '반국가범죄'로 죄명이 바뀌는 등 정치적 색채는 유지하면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조문의 수도 16개에서 12개로 감소되었다. '공민의 조국반역죄'(제52조)와 '간첩죄'(제54조), '반혁명 암해죄'(제59조)·'반혁명적

²⁹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p. 278; 김근식, 『형법학 2』(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p. 8; 한인섭, "북한형법 반세기," 『북한법 50년-그 동향과 전망』(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pp. 96~98.

³⁰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p. 100.

파괴죄’(제60조)·‘반혁명적 태업죄’(제61조)가 각각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무장침입죄’(제57조), ‘사회주의국가 적대 및 혁명적 인민적대죄’ 등 2개 죄목은 삭제되었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1987년 형법 제51조)는 신설되었다. 1974년의 형법이 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반혁명범죄에 대해 사형과 전재산 몰수라는 단일의 중형을 규정해놓고 있었던 반면 1987년 형법은 반국가범죄에 대해 ‘로동교화형’을 규정하여 놓고 있다.³¹

2004년 개정 형법에서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로 명명하여 하위 절의 형태로 되어 있던 민족범죄를 장의 제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총 14개 항목으로 늘어났지만 기존의 조문을 세분화하고 범죄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조치로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형법의 역할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 수용여부가 변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 제9조에서 “범 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본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4년 형법도 이를 계승하고 있는 바, 유추해석을 허용하고 소급효 금지 규정이 미비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1987년 형법에서는 유추해석의 제한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제10조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똑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

³¹ 한인섭, “북한형법 반세기,” p. 105.

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을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현과 범인의 표지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1987년 형법 제8조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죄로 보던 행위들이 법에서 죄로 보지 않거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종전 법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하여 행위시법주의와 신법우선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소급효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³²

그런데 2004년 개정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사실상 수용하고 있다. 유추해석을 규정하였던 1999년 형법 제10조를 삭제하고 제6조(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에서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신설·규정하고 있다.³³ 또한 경제활동 부문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의 신설로 조항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채택과 더불어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적인 처벌로써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상행위로 인한 사회적 일탈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국가의 질서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새로운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해 새로운 범죄의 유형으로 형법에 삽입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여 직접 규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³² 위의 글, pp. 106~107.

³³ 국제사회는 북한형법상 유추해석 조항을 삭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할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을 관장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제출한 B규약 2차보고서를 심의한 후 발표한 최종검토의견서(Observing Conclusions)에서 형법 10조의 유추해석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³⁴ 윤대규, “북한 형법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

<표 II-2> 주요 사안별 형법 개정 내용 비교

구분	1974년 형법	1987년 형법	2004년 형법
사명	주석의 보위, 국가노선과 정책의 옹호·관철,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수호, 온 사회의 주체사상 일색화에 기여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 인민들의 자주적·창조적 생활 보장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 인민들의 자주적·창조적 생활
정치적 성격의 범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정책의 기본’편 신설 반혁명범죄 (16개조)	반국가범죄 (12개조) - 1절: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8개조) - 2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2개조) -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고자죄 (2개조) * 형사정책 기본편 삭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14개조) - 1절 반국가범죄 (8개조) - 2절 반민족범죄 (3개조) - 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3개조)

형사소송법의 사명 상으로도 정치적 색채를 삭제하고 범죄 처리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9년 형사소송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제1조)고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³⁵ 형사소송절차를 통한 범죄의 처리목적이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보위에 있었다. 그런데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능에

연구회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05).

³⁵ 중국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범죄사실을 정확·신속하게 조사하여 밝히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보증하고 죄없는 자가 형사추궁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공민이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와 투쟁하도록 교육하여 사회주의법제를 유지·보호하며 공민의 인신과 재산에 대한 권리, 민주적인 권리 및 그밖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데 있다”(제2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제1조 형사소송법의 사명)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형사처리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형사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III

북한의 범죄관, 형벌 및 사법기관

1. 범죄관과 형벌 및 형사처리 원칙

가. 범죄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위법행위를 형사 처리하는데 있어 2004년 형법에서는 기존 형법과는 달리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라는 정치에 대한 법의 기능이라는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 처리가 정치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성격이 형사처리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범죄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형법에서는 “죄라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이다”(제7조)라고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87년 개정된 형법부터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라고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형법학자들의 범죄 개념에 따르면 범죄는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대중에게 위험한 행위인 동시에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 및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주의법을 어기는 위법성 있는 행위이다.³⁶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주권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위반하는

³⁶ 김근식, 『형법학 1』, pp. 83~85. 중국형법은 다음과 같이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일체의 국가주권과 영토의 안정성 및 안전을 위해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민주독재정권을 전복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며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파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개념이 정치적 측면에서 형사 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주권의 침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격을 정치적 성격의 범죄와 일반범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를 구분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와 연관된 범죄의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즉,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는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인식이다. 먼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소위 착취제도를 복구하려는 반혁명적대분자들에 의해 감행되는 범죄행위가 반혁명범죄이다. 반혁명범죄는 사회의 혁명과 건설을 저해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다.³⁷

이러한 인식에 따라 북한에서는 반혁명범죄를 발생시키는 근원을 찾아내어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반혁명범죄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혁명과의 법적 투쟁을 전개하는 목적은 죄를 범한 자에게 죄과에 따른 형벌을 주어 범죄의 개별 예방과 일반예방을 실현하자는 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급투쟁의 승리에 철저히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³⁸ 이와 같이 1980년대 형법 서적에서는 사회주의가 선 이후 사회주의 제도 자체를 전복하려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러한 성격의 범죄를 반혁명범죄라는 정치범죄로 규정하여 철저히 진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혁명범죄(1974)가

피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군중 집단소유의 재산을 침해하며 공민개인의 소유재산을 침해하고 공민의 인신에 대한 권리와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며 기타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법률에 따라 형벌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다” (제13조).

³⁷ 김근식, 『형법학 1』, p. 5.

³⁸ 위의 책, pp. 28, 33.

반국가범죄(1987)→반국가 및 민족범죄(2004) 형태로 범죄 명칭상으로는 변화하고 있지만 2004년 개정형법에서도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구분하는 인식과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를 와해시키려는 행위의 범죄를 정치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1987년 형법에 규정된 ‘반국가범죄’와 2004년 형법에 규정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1987년 반국가범죄와 2004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요약 비교

반국가범죄 (1987)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2004)	
국가 주권을 반대 하는 범죄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무장폭동에 가담하였거나 참가한 자	반국가 범죄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로행위를 감행한 자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행위를 한 자
	공화국 전복의 음모, 테로행위, 대역죄 또는 반국가적인 파괴암해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		반국가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
	공화국 공민이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 반역행위를 한 경우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기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기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감행한 자		반국가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 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자

반국가범죄 (1987)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2004)	
민족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	반민족 범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탄압, 박해하는 적대행위를 한 경우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
반국가 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죄	반국가범죄자 또는 반국가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로서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또는 반국가범죄가 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자		반국가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반국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자

<표 III-2> 2004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조항별 형벌

구분	범죄 행위	형벌
반국가 범죄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 혹은 음모에 가담한 자	- 5년 이상 로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혹은 사형 및 재산몰수형
	테로죄: 반국가목적으로 간부·인민 살인·납치, 상해를 입힌 테로 행위를 한 자	- 5년 이상 로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혹은 사형 및 재산몰수형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	- 5년 이상 로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조국반역죄: 조국을 배반하고 타국으로 도망, 투항, 변절 혹은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	- 5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혹은 사형 및 재산몰수형
	간첩죄: 공민이 아닌 자가 북한에 대한 정탐목적으로 비밀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파괴암해죄: 반국가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 자	-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 사촉죄: 타국 사람이 부추겨서 북한에 대한 무장간섭 혹은 외교단절, 조약 파기 행위	-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타국과의 관계약화를 목적으로 북한 체류 외국인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자	-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반민족죄	민족반역죄: 제국주의 밑에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 투쟁 탄압, 민족이익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	-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타국인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 투쟁 탄압	-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조선민족 적대죄: 타국인이 조선민족 적대목적으로 해외 체류 조선 사람의 인신, 재산 침해	- 5년 이상 10년 이하 로동교화형 - 정상이 무거운 경우: 10년 이상 로동교화형

구분	범죄 행위	형벌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	- 4년 이하 로동교화형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범죄 준비 혹은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자	- 3년 이하 로동교화형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방지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음에도 내버려 둔 자	- 3년 이하 로동교화형

반면, 일반범죄는 범죄의 발생 원인이 인민 내부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범죄는 반혁명적 목적 없이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로부터 국가사회질서를 문란시키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약취하며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³⁹ 이와 같이 일반범죄는 노동계급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의 잔재로부터 발현되는 범죄이다. 일반범죄는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침해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질서 및 혁명적 규율을 문란 약화시킨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후까지 절도·살인·불량행위·매음·추첩 등 일반범죄가 발생하는 까닭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개인주의·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뿌리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다.⁴⁰ 이와같이 일반범죄는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소위 착취제도를 복구하려는 반혁명적대분자들에 의해 감행되는 반혁명범죄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낡은 사상잔재에 깊이 물들어 있는

³⁹ 김근식, 『형법학 2』, p. 50.

⁴⁰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 pp. 47~48, 69~70.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어디까지나 그들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이다.⁴¹

나. 형벌

1980년대 북한 형법학자에 의하면 형벌에 대해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반대하고 저해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반혁명범죄자들과 일반범죄자들에게 가하는 사회주의국가의 폭력적인 진압수단이며 제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⁴² 사회주의 국가는 소위 주체의 혁명위업 실현을 위하여 반혁명범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하고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보장하는 폭력적 강제수단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예리한 무기가 형벌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형벌은 폭력적인 징벌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다른 제재 수단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북한에서도 형벌은 재판기관들에 의해 형사재판의 절차로서만 적용되는 강제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제재와 구별된다.⁴³

이상에서 살펴본 형벌관의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형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형벌 상으로는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1974년 형법에서는 사형, 징역형, 교화로동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7년 형법은 사형, 로동교화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으로 형벌을 규정하면서 기본형벌과 부가형벌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교화로동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을 로동교화형으로 이름을 바꾸어 자유형을 단일화하

⁴¹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403~404.

⁴² 김근식, 『형법학 1』, pp. 155~157.

⁴³ 위의 책, pp. 157~158;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 pp. 205~207.

였다. 그리고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이 새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2004년 개정형법에서는 로동교화형을 유기로동교화형과 무기로동교화형으로 세분하여 ‘무기로동교화형’을 신설하였다. 특히 새로운 형벌로서 ‘로동단련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을 별도의 부가형벌로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III-3> 형법 개정 시 형벌의 변화

1974년 형법	1987년 형법	2004년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 징역형 - 교화로동형 - 선거권박탈형 - 재산몰수형 <p>* 1950년 형법: 사형, 징역, 교화로동, 벌금, 일정한 권리의 박탈,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 일부 또는 재산의 몰수</p>	<p>기본형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 로동교화형 <p>부가형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 박탈형 - 재산몰수형 -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p>기본형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 - 무기로동교화형 - 유기로동교화형 - 로동단련형 <p>부가형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권박탈형 - 재산몰수형 - 자격박탈형 - 자격정지형

이상에서 보듯이 2004년 개정된 북한 형법에는 기본형벌과 부가형벌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형벌에는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이 있고, 부가형벌에는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이 있다.

먼저, 사형은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04년 이전 형법에는 사형의 집행 방법에 대해 규정이 없었다. 다만, 1997년에 채택하고 1998년 개정된 판결판정집행법 제 32조에서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 등본,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다른 법률에서 집행방식을 규정하고 있었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수감하여 노동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기로동교화형은 1년부터 15년까지이며,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던 기간의 1일은 유기로동교화형 1일로 계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고 있다. 구형법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류되어 있었던 기간은 로동교화형 기간에 계산하여 넣는다”(1999년 형법 제25조)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전 형법에서는 공민권의 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공민등록법에서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그러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로동단련형이 신설되었는데,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로동교화형과는 달리 로동단련형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의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인데,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1일은 로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보듯이 로동교화형 1일이 로동단련형 2일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만, 로동교화형과 달리 ‘일정한 장소’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표 III-4> 구금시설에 보내지는 범죄

범죄 유형	교화소		일정한 장소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14개 범죄)	국가전복음모죄 등 5가지	국가전복음모죄 등 14가지	-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16개 범죄)	-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 15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 10가지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죄 (104개 범죄)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강도죄 등 6가지	국가재산 훔친 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83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76가지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26개 범죄)	력사유물 밀수, 밀매죄, 마약 밀수, 밀매죄 등 3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 25가지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등 16가지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39개 범죄)	-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직무집행방해죄, 허위날조, 유포죄 등 29가지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20개 범죄)	-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 15가지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 18가지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26개 범죄)	고의적중살인죄, 유괴죄 등 3가지	고의적중살인죄 등 25가지	정당방위초과중상해죄 등 13가지

이상의 기본형벌은 생명의 박탈과 인신의 구속이라는 형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범죄자에 대해서 인신구속이라는 기준에서 북한에서도 집행유예의 제도(형법 제51조, 제52조)가 있다. 그런데 판결판정집행법 제37조에서 “집행유예를 적용할 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 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기관이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는 판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면제도와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특사, 대사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53조). 또한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재판소의 심리, 판정에 따라 만기전 석방 혹은 유기로동형으로 감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사회적 교양처분’이라는 형태로 인신 구속 없이 처벌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교양처분은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 사회적 교양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1987년 형법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이외에도 판결판정집행법(제29조, 제38조), 검찰감시법(제36조), 형사소송법(제13조) 등의 법률에서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해 규정하여 두고 있다. 그런데 1999년 형사소송법의 경우 사회적 교양처분은 제13조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었던 반면,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제2장 제7절 8개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석방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제66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판결의 종류와 관련하여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사회적교양처분을 하는 판결은 유죄판결이며 그에게 범죄가 없다는 판결은 무죄판결”(제343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교양처분은 범죄가 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처벌 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III-5> 사회적 교양처분

구분	내용
사유	14세 이상 17세 미만인 경우 형벌을 주지 않고 교양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절차	검 사: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결정 재판소: 판결, 판정
처리 (조치)	구류되어 있는 피심자, 피소자 석방
지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와 같이 인정
교양담당	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지 리(읍, 구, 동)
취소	기 범죄의 형사소추시효기간 내에 새로운 범죄 시

범죄자의 형사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은 형사소송의 중지를 들 수 있다.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제2장 일반규정에서 제5절 형사소송의 중지라는 새로운 절을 신설하였다.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을 계속 취급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을 중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신병, 중병에 대한 감정은 법의감정의사 혹은 인민병원 의사협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심원, 검사, 재판소가 처리할 수 있다.

- ①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
- ②검사는 기소를 중지하는 결정
- ③재판소는 재판을 중지하는 결정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의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시는 범죄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다. 형사처리 원칙

1992년 형사소송법 이후 북한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리 과정에서 계급노선, 균중노선, 인권보장, 범죄의 사전 방지, 과학성·객관성·신중성(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성 추가)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먼저 북한에서는 첫째, 노동계급 원칙의 견지, 둘째,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배합하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범죄자를 처리하는 원칙(2004년 형법 제2조)을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의식적으로 반대하는 반혁명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저지른 위법현상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⁴⁴

이러한 2가지 처리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은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적과 우리편 사이의 모순’과 ‘인민 내부의 모순’을 확실히 구별하여 ‘적과 우리 편 사이의 모순’에 속하는 반국가 범죄와의 투쟁에서는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적대분자와 주동분자를 철저히 진압·분쇄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인민 내부의 모순’에 속하는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는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

⁴⁴ 김정일. “사회주의범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p. 342.

재를 배합하는 계급노선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두 가지 원칙은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구분하는 북한의 범죄관과 연결되고 있다.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급노선의 원칙에 따라 처벌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의 사명 상으로는 정치적 색채가 삭제되고 있지만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구분하는 정치적 태도가 근본적으로 견지되면서 형사 처리상 이러한 범죄관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⁴⁵

먼저 정치범죄를 저지른 계급적 원수를 찾아내 핵심인물을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계급노선 원칙인 것이다. 반혁명범죄의 경우에는 폭력수단인 형벌에 의한 법적 제재를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비노동계급적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와 전체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하게 옹호 보위하는 것이 형법의 계급적 본질이므로 이러한 계급적 본질로부터 반혁명범죄를 범한 소위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⁶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검찰기관들은 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 집행을 감독하며 특히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해치려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모조리 잡아내며 철저히 진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⁴⁷

⁴⁵ 노동계급 원칙과 균중노선 원칙은 다른 사법 관련 법률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판결·판정집행법에서는 “국가는 판결, 판정 집행에서 노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감시법에서도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에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광범한 균중에 의거하여 사업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⁴⁶ 법무부, 『북한법연구(Ⅶ)-신형법』, p. 47.

⁴⁷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반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범죄는 사회주의제도를 파괴·전복하려 하거나 혁명과 건설을 반대하는 적대적 성격의 범죄가 아닌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이므로 처리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형사처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범죄는 법적 제재를 위주로 철저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보다 교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형사처리 원칙이다.

일반범죄사건은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는 원칙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반범죄와의 투쟁은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인것만큼 어디까지나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여야 합니다. 법적통제의 날을 세운다고 하여 법을 어긴 사람들을 덮어놓고 재판에 넘겨 형벌을 주어서는 혁명에 리로울것이 없습니다. 범죄상습자들과 극심한 개인리기주의에 사로잡혀 죄를 저지른자들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들에 대하여서는 재판에 넘겨 형벌을 주어야 하지만 일시적인 물욕이나 과실로 법을 어긴 자들은 사회적교양을 통하여 개조하여야 합니다.⁴⁸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반혁명범죄와 달리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착취계급의 사상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의 경우처럼 폭력의 방법, 법적 제재의 방법으로써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⁴⁹

사상전선에서 탐오랑비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무엇보다도 먼저 사상전선에서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국가재산을 애호하지 않으며 그것을 탐오랑비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상의 표현입니

2일,”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54.

⁴⁸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p. 318.

⁴⁹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 p. 72.

다 … 오래 동안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머리 속에 형성된 개인리기주의사상을 뿌리째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낡은 사상잔재를 단지 법적 제재만으로는 없앨 수 없으며 또 그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여서는 끝이 없습니다. 탐오랑비현상을 없애며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특히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부가운데 자기의 몫도 있으며 사회의 부가 늘어날수록 자기도 더 잘살수 있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깨닫도록 사상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⁵⁰

다음으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적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자에게 강력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범죄의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낡은 사상 잔재가 발현될 수 있는 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줌으로써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 발현을 저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일반범죄를 범한 근로인민에 대해서는 교양하고 개조하는 방향에서 징벌과 관대를 바르게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정책의 기본원리이다. 다만, 밖으로부터 제국주의 사상문화가 계속 침투해 오고 있는 데도 일반범죄와의 투쟁을 약화시킨다면 낡은 사상잔재가 되살아나고 조장될 수 있으므로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⁵¹

사회적 교양으로 개조해야 할 일반범죄와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일반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 일반범죄행위를 감행한 자 중에서 범행이 경미한 자들을 사회적 교양으로 개조하고 범행이 엄중한 자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

⁵⁰ 김일성,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중앙로동당 제4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1~2.

⁵¹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 pp. 45, 47~48.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범죄자의 사회계급적 처지, 낡은 사상에 물젖은 정도 등에 의해서 개선성 여부를 ‘정치적으로 평가’한 후 개선성이 없는 자에 대해 엄격히 징벌하는 방침을 취한다.

셋째, 일반범죄를 감행한 자 중에서 상습범들과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일시적인 몰욕이나 과실에 의해 법을 어긴 자들은 사회적 교양으로 돌린다.

넷째, 추종분자와 피동분자들은 사회적 교양에 돌리고 범죄를 조직하고 부추긴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⁵²

그런데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도 계급노선 원칙은 견지되고 있지만 일부 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의 하나는 형벌감경 조건으로 신설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원상복구 부분이다. 범죄자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물질적 수단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형량을 감경한다는 것은 사회주의법체제 이론 하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내용이다. 범죄의 계급적 성격과 행위자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사회주의적 형벌관에서 볼 때 이질적인 것이다. 그만큼 북한에서도 형벌의 성격이 일부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다.⁵³

다음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균중노선의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2004년 형법에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세우는 것이 형법의 사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진일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균중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⁵² 위의 책, pp. 79~80.

⁵³ 윤대규, “북한 형법의 동향과 평가.”

지 못하고 있다. 제3조(균중로선의 관철원칙)에서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균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균중노선을 관철하는 원칙 하에 일반 인민들의 형사소송 절차 참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 ①인민참심원 제도
- ②제판소 선거제도를 통해 구성에 능동적 참여
- ③현지 공개재판을 통해 인민대중의 참여 유도
- ④현지료해, 현지검증 등을 통해 일반인이 재판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⁵⁴

그리고 형사처리와 관련하여 범죄 미연방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오고 있다. 일반범죄에 대한 당 형사정책의 기본방침은 일반 범죄를 발생시키는 근원을 찾아내어 이를 청산하는 것이라 한다.⁵⁵

형사소송법 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사처리 과정에서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격이 다른 법률을 통하여 반영되고 있다. 판결판정집행법에서는 “국가는 판결, 판정 집행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공민의 이익도 다같이 보호하도록 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을 법규정에서도 드러내고 있다.⁵⁶

이상에서 보듯이 계급노선, 균중노선을 통해 정치에 대한 법의 종속 인식이 형사처리에 투영되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인권과 공정성, 법에 규정된 절차, 방법의 준수를 규정하는 등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⁵⁴ 이백규,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

⁵⁵ 김근식, 『형법학 1』, p. 46.

⁵⁶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1992년 형사소송법에서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제4조)고 규정하여 인권의 보장 원칙을 명문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문구는 그대로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도 견지되고 있다.

또한 1999년 형사소송법에 형사사건을 취급하여 처리하는 데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공정성’의 기준을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제8조)고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와 방법의 준수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2. 사법기관과 형사 관련 당사자

가. 사법기관

북한의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처리 절차를 담당하도록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직으로는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소, 재판소, 변호사를 들 수 있다.

먼저 인민보안성은 수사와 예심 그리고 교정시설로서 교화소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안전단속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에 인민보안성, 각도·직할시 보안국, 시·군·구역 보안서, 리·동 단위의 분주소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처리 절차와 관련 있는 중앙의 인민보안상 조직으로 감찰국, 수사국, 예심국, 교화국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인민보안기관의 경제감찰 업무와 검찰소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가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앙에 상응하는 도·직할시 보안국에는 감찰과, 수사과, 예심처가 있으며, 시·군·구역의 보안서에는 감찰과, 수사과, 예심과, 반탐과가 있다.⁵⁷ 인민보안성은 후술하듯이 일반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정치범죄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표 III-6> 인민보안성 형사처리 관련 부서 및 업무

부서	담당 업무
수사국	범죄자 체포, 현장 검증, 지문 대조, 혈액 감정, 필적 감정, 산하 도 보안국 과학수사활동 지도·감독
예심국	산하 도 보안국 예심업무 지도 감독, 미해결 사건에 대한 사건 수사 및 범죄자 체포, 감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수사 보장·여죄 추궁·범죄 확정, 사건 조서 검찰소에 송치, 재판에 의한 형 확정시까지 구류장 설치 운영·감독
교화국	범죄자 수용 관리, 북한전역의 교화소(8개소)·노동교양소·인민보안성 담당 관리소에 대한 업무 지도·통제 감독, 사면·감형, 기한전 출소 등 행형 등의 업무
산업감찰국	일종의 경제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의 경제정책 업무 수행 감독, 경제 현행범 사건 조사 후 예심국에 인계

⁵⁷ 인민보안성에 대해서는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31~46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새터민 장○은 인민보안기관의 감찰과는 일반감찰과 경제감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경제정책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검찰소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검찰소는 인민보안기관이 법을 정확히 집행하는 지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증언하였다.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검찰소는 1998년 헌법에서 검찰소 규정을 재판소 규정보다 앞부분에 배치하여 그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 헌법에 의하면 검찰 조직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검찰소, 시(구역) 검찰소,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소와 상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도검찰소와 군검찰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부문에 종사하였던 새터민 이○○은 철도분국마다 재판소와 검찰소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신의주에도 철도검찰소와 철도재판소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⁸ 중앙검찰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가 임명 또는 해임하며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동일하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와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먼저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검찰소의 임무(제150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①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 감시
- ②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 감시
- ③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국가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 보호

그리고 검찰은 후술하듯이 기소 등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감시법을 별도의 단행법령으로 제정하여 헌법상의 감시임무를 구체화함으로써 법제정비상 발전된 모습을 보

⁵⁸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3월 11일.

이고 있다. 검찰감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검찰감시법 제1조)이다. 검찰이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목적은 “감시활동을 통하여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온갖 범죄적 및 위법적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며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조선로동당의 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검찰감시법 제2조)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검찰감시법을 제정한 목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국 곳곳에 정확하게 관철되도록 하고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⁵⁹

이를 위해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에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광범한 군중에 의거하여 사업”(검찰감시법 제4조)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검사에 대해 “국가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자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다운 옹호자”(검찰감시법 제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로서 적합한 자는 노동자계급에 속하여 사회의 선진분자의 중핵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일체의 착취적 요소를 반대하며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실천활동이 정치사상적으로 검증된 자를 임명한다. 특히 검찰기관의 요원으로 선발되는 자는 당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혁명활동으로 단련된 간부가 기본조건이다.⁶⁰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판사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

⁵⁹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⁶⁰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法の法と司法制度』(東京: 日本評論社, 1985), p. 222.

거하여 선거를 통하여 임명된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가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와 같다.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의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휴회 중 해당 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재판소의 임무(1998년 헌법 제156조)는 다음과 같다.

-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 보호
- ②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
-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 및 공증사업

재판소에 대해서는 「재판소구성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구성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개정과정에서 정치적 성격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판소구성법은 1976년 제정된 이후 1998년 개정된 법에서 정치적인 색채는 대부분 삭제하고 있다.

첫째, 재판소구성법의 사명에서 정치적 색채가 삭제되고 있다. 구법에서는 재판소구성법에 대해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며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법적으로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소구성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제3조)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들을 반대하며 적극 투쟁토록 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 위업의 수행에 이바지”(제4조)해야 한다고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판소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재판의 정치 및 당의 종속을 명시적으로 규정(제5조)하고 있다. 그런데 신법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고 재판소구성법의 사명에 대해 “재판소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 민사 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는데 이바지”(제1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색채가 사라지고 형사, 민사사건의 정확한 심리·해결에 근본사명을 두도록 변화하고 있다.

둘째, 노동계급적 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있다. 구법에서는 “주체의 사상체계에서 기초하여 법을 노동계급적 립장”(제6조)에서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활동을 통하여 반혁명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일반범죄자들을 엄격히 징벌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온갖 범죄적 침해로부터 튼튼히 수호”(제23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신법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이 전면 삭제되었다.

셋째, 판사의 자격에서도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색채는 삭제되었다. 1976년 재판소구성법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국민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만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제국주의 통치 밑에서 판사 또는 검사를 한 자는 판사, 인민참

심원으로 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제15조). 그런데 1998년 개정법에서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국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한 자격이 없는 자는 판사로 될 수 없다”(제6조)고 규정하여 정치적 색채를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1998년 재판소구성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적 색채를 띤 조항을 삭제하였지만 여전히 계급적 원칙은 견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들을 반대하며 적극 투쟁토록 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 위업의 수행에 이바지”(제4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사회주의헌법에 재판소의 임무에 대해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제156조)한다는 조항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제도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인민참심원 제도를 두고 있다. 중앙재판소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도(직할시), 인민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선거로 선출하며, 해당 인민위원회와 임기가 같다.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 회의에서 선거(재판소구성법 제5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무자회의는 군사재판소와 종업원회의는 철도재판소와 각각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⁶¹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재판소구성법 제12조)하며,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생활비, 보수, 여비는 소속 기관과 단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13조).

다음으로 형사처리 관련 당사자로서 변호사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 변호사는 “당 정책의 선전자로서 재판심리과정에 당 사법정책의 정당성을 인민들에게 옹계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당 정

⁶¹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책을 옹호하여 투쟁”하여야 하는 지위라고 인식되어 왔다. 변호사는 “피소자가 범한 죄의 엄중성과 함께 그가 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원인을 깊이 분석·논증함으로써 피소자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 앞에 진 죄과의 엄중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깊이 뉘우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변호인은 피소자의 대리자가 아니며 피소자를 변호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⁶² 그런데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협법에서는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제158조)한다고 변호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을 별도로 정하여 변호제도를 체계화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자격은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변호사법 제20조)하고 있다.

- ①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 ② 법부문에서 5년 이상 일하던 자
- ③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또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제121조)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활동의 독자성을 보장(제6조)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회의 지도 밑에 활동”(제8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각급변호사회는 하급 위원회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통제(변호사법 제30조 3항)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변호사는 개개인이 아니라 변

⁶²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pp. 76, 207; 이백규,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에서 재인용.

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다. 또한 피심자,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피심자, 피소자는 스스로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참여없이 재판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제276조).

북한의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담당자에 당사자인 피심자, 피소자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공화국 형사소송에서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자는 저지른 죄행으로하여 그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당해야 할 자들이다. 즉 공화국 형사소송에서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자는 소추자와 맞서 소송을 움직여나가는 당사자가 아니라 조사의 대상, 책임추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형사소송법이 피심자, 피소자를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소송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객체, 처벌받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태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배척하고 재판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어 피소자의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부정되고 절차의 객체 내지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⁶³

나. 사법기관 상호관계

북한의 형사처리 절차는 뒤에서 상술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수사→예심→기소→재판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로 관할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은 관할지역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⁶³ 조병천, “공화국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위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1권 제1호 (1995), p. 5;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p. 319에서 재인용.

<표 III-7> 형사처리 단계별 관할 기관

구분	담당	비고 (1999년과의 비교)
수사	해당기관의 수사원 필요시 검사	사회안전, 국가안전보위기관의 수사일군 필요시 검사
예심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 인민무력기관의 예심원	사회안전, 검찰, 국가안전보위 기관의 예심원
기소	검사	검사
재판	재판소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에 의거	동일
감시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담당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는 범죄에 대해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인식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견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엄격한 구분은 형사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조직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 점은 형사소송법에서 단계별로 관할권이 라는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정치범죄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 일반범죄의 경우 인민보안성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검사는 감시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가 일반범죄사 건일 경우 그것을 예심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반국가범죄사건은 해당 예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검찰감시법(제35조)에서도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범죄 중에서 행정경제부문과 법기관의 법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표 III-8> 범죄별 관할기관

구분		사건 종류	관할
수사 (수사원)	일반수사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안전보위기관
		일반범죄사건	인민보안기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사건	검찰기관
	특별수사	철도운수부분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	철도 인민보안기관
		철도부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일반범죄사건	철도 검찰기관
		군인, 인민보안원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	군사 검찰기관
예심 (예심원)	일반예심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안전보위기관
		일반범죄사건	인민보안기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사건	검찰기관
	특별예심	군사상 범죄사건 군대안의 일반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	군사검찰기관
		철도운수부분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	철도인민보안 기관
		철도부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일반범죄사건	철도 검찰기관

이러한 관할권에도 불구하고 법기관 상호 간에 독립성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형사처리 제도에서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법기관의 사업도 당의 영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사법기관의 기본 사명이 당정책의 구현에 있다는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재판소는 소장, 판사, 인민참심원이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고 자기 사업에 대해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판사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검찰소의 경우에도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과 해임권한이 최고인민회의에 있고 자기 사업의 책임을 최고인민회의에 지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는 군중노선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찰감시법의 존재에 따라 검찰소가 다른 사법기관에 대한 감시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첫째, 검사는 검찰감시법 제9조에 따라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정한 법규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둘째, 검찰감시법 제11조에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 가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방침을 구현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려면 검찰기관들에서 수사, 예심 활동과 재판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검찰기관들에서는 수사, 예심 활동과 재판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제기된 모든 사건이 당정책과 법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⁶⁴

⁶⁴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p. 321.

이와 같이 검찰소는 사건심리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재판과 중재사건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조항은 재판의 독립과 상충될 수 있는 조항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판사의 상위에 존재하는 사법체계를 가지게 된다.⁶⁵ 또 검사는 확정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되는가를 감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검찰감시법 제12조).

다음으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교양처분’과 관련하여 검찰과 재판소, 다른 기관과의 상호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검찰감시법 제36조에는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하려 할 경우 사회주의범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기거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균중투쟁을 벌리도록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검찰기관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 가운데서 재판에 넘길 대상은 재판에 넘기고 사회적교양을 통하여 개조할 대상은 범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하거나 해당 기관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짜고들어 교양개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⁶⁶

사회적 교양처분의 판단은 검사가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사회주의범무생활지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집행은 범죄자가 소속된 기관, 단체, 기업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적 교양처분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63조에서는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해 검사와 재판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검사는 상급검찰소의 승

⁶⁵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⁶⁶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p. 319.

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판소의 경우 피소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 판결,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교양처분의 집행에 대해서도 검사의 결정은 검찰감시법(36조)으로, 재판소의 판결, 판정은 판결판정집행법(제29조)에 따라 집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법에 의하면 사회적 교양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지고 교양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판결판정집행법 제38조).

끝으로 재판소가 ‘범죄사건의 반송 판정’을 통하여 예심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재판 준비단계에서 “재판심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심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기소장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형사소송법 제293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심리 단계에서 재판소는 판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심에서 범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법의 원칙과 절차를 심하게 어겼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하도록 하였다(형사소송법 제351조). 나아가 제2심 재판에서 “제2심 재판소는 예심 또는 제1심 재판심리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범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형법조항을 적용하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이 경우 범죄사건을 어느 단계부터 다시 심리하라는 것을 지적한다”(형사소송법 제376조)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마치 재판소가 상급수사

기관처럼 좀 더 수사를 잘 하도록 검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낸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심판기관이 완전히 분화되지 아니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판소는 사건을 검사 또는 예심기관에 환송하는 권한을 보유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기소사실의 추가 및 변경에 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사 및 소추 기관과 심판기관이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는 점이 있다.⁶⁷

이에 대해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9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소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범죄사건을 반송하였을 경우 재차 수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절차를 통해 재판기관 간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제1심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소의 직무관할이 불명확하다.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의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 저해, 상소권의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 둘째, 상급재판소가 일방적으로 하급재판소의 관할 사건을 다른 재판소로 보낼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중앙재판소 소장이나 중앙검찰소 소장이 제1심 재판소의 무죄판결 등에 의한 피소자의 석방을 일방적으로 집행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비상상소와 재심을 통해 상급재판소가 하급재판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점을 들 수 있다.⁶⁸

⁶⁷ 이백규,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

⁶⁸ 위의 글.

3. 유사사법제도

북한에서는 형법(형사소송법) 이외에 법률과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일반주민들을 통제하고 단속하는 형사처리 기제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먼저 유사사법법제로 ‘사회안전단속법’이 있다. 사회안전단속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안전단속법은 형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 ‘인민의 권리와 생명재산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단속법을 제정한 것은 “형사법을 제외한 법 위반자를 조사, 처리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 절차를 규제”(제7조)하는 데 있다. 그리고 사회안전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옹계 결합”(제5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법상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단속법에 규정된 단속의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조)
- ②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 (제9조)
- ③설비, 원료, 자재, 생산물의 부실관리, 유용, 낭비, 불법처분, 계획 허위보고, 수출입질서 위반 행위 (제10조)
- ④상품의 불법 판매 행위 등 상업 질서 위반 행위 (제11조)
- ⑤외화벌이, 외환관리질서 위반 행위 (제12조)

- ⑥ 무단결근, 노동시간 미준수 등 노동행정질서 위반 행위 (제13조)
- ⑦ 퇴폐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녹음물의 불법적 수입, 복사, 유포 행위 (제14조)
- ⑧ 패싸움, 공공시설물 파손 등 사회공중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제15조)
- ⑨ 불법 의료행위 및 약품 판매 행위 (제16조)
- ⑩ 여행 질서, 도보 질서 위반 행위 (제17조)
- ⑪ 기밀자료와 인쇄설비의 보관, 이용질서 위반 및 기밀 누설 행위 (제18조)
- ⑫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경비질서 위반 행위 (제19조)
- ⑬ 공민 등록, 숙박 등록, 살림집 이용질서 위반 행위 (제20조)
- ⑭ 교통질서 위반 행위 (제21조)
- ⑮ 불법 도로건설, 교통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행위 (제22조)
- ⑯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화재를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물과 시설을 건설, 이용하는 행위 (제23조)
- ⑰ 화약류, 총기류, 방사성 및 독성물질의 취급질서 위반 행위 (제24조)
- ⑱ 내양설비와 사람이 타는 권양설비, 나룻배를 검사받지 않거나 운영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제25조)
- ⑳ 큰물피해, 지진피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 (제26조)
- ㉑ 금지된 시기와 장소 혹은 금지된 방법으로 동식물 포획 및 채취, 토지 남용 행위, 산림 도벌 행위, 오염 행위 등 국토관리, 환경보호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제27조)
- ㉒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과 공민의 헌법적 권리,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제28조)

인민보안원(구 사회안전원)은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반자를 단속하게 되면 신분 확인,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문서를 보거나 필요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증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29조). 그리고 진술서 첨부 등 조서를 작성하고 녹음, 녹화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제30조). 그렇지만 범위반자를 단속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제31조). 뿐만 아니라 인민보안원은 억류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법 위반 행위가 엄중하거나 범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법 위반자를 한 장소에서 한번에 여러명 단속하였을 경우 억류할 수 있다(제33조). 법 위반자의 억류기간은 3일이며, 필요한 경우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제34조). 그리고 법 위반자가 단속에 불응하여 도주, 단속 보안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사회질서 문란자를 체포하는 데 다른 방법이 인정될 경우 전투기술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5조).

단속된 법 위반자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개준성과 위법행위의 위험성 정도(제38조)를 들고 있다. 법 위반자를 단속한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처리(제41조)해야 하며, 해당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처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법 위반자를 단속한 인민보안원이 직접 처리 할 수도 있다(제39조). 그리고 위법행위가 엄중한 경우 정상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거나 해당기관에 넘기도록 되어 있다(제46조).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안전단속 대상의 범위는 광범위한데 이러한 행위들이 2004년 형법에 상당부분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형법에 편입될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새롭게 신설된 ‘로동단련형’으로 되어 있다. 로동단련형의 경우 2년 미만으로 형기가 규정되어 있

다. 이러한 동향(형벌의 강화)은 사회질서가 경제적 어려움의 영향으로 더욱 더 문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⁹

정규재판조직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주민을 처벌하는 또 다른 유사사법제도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동지심판회를 들 수 있다. 북한법률 상으로 이들 조직이 유사사법법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검찰감시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검찰감시법 제40조 검사가 범위반 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로동단련 또는 구금처벌을 하려할 경우”를 들고 있다.

동지심판회는 국가사법기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독특한 민중재판조직 내지 형식, 자아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지심판회는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각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설형태가 아니라 심판대상자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직·구성되는 제도이다. 심판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 등의 당위원회가 주도하여 동지심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심판원은 당위원회에서 선출되며 보통 당위원회 비서 등이 그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동지심판위원회의 대상은 형사관련 내지 도덕적 비리 등과 관련된 사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①경제범 및 과오로 인한 손실, ②김일성 유일사상에 저해되는 행위 중 경미한 사건, ③기타 사범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⁶⁹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6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처분, 경제적 탐오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액수의 10배 내지 20배 정도 되는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정벌금 처분, 행정적 권리행사 중지 처분, 자아비판 처분, 엄중 경고 등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지심판회는 인민들 내부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범위반 행위를 인민 자신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인민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교양·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즉, 군이 정식 형사재판절차나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안 또는 노동당의 방침이나 각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협의에 따라 구제해주기로 한 사안을 심판대상자가 속해 있는 단체의 구성원 앞에서 일단 폭로하고 사상투쟁을 전개하도록 하되 그 대신 경미한 제재로 같음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⁷⁰

그리고 동지심판회는 군대 내 중대, 대대 등의 단위에서도 열린다고 한다. 부대 내 구타, 사건화되지 않은 탈영 등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을 교양하려고 중대 정치지도원이 제기한다고 한다. 먼저 해당자가 자아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처벌을 결정한다고 한다. 주로 식당 일, 눈치우기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동지심판회는 자주 열리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다.⁷¹

다음으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들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앙기관과 각 도(직할시)·시·군의 지방인민위원회 산하에 합의체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조직하였다고 한

⁷⁰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pp. 630~635. 농촌 등으로 추방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증언이 있었다.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21일. 그는 인민보안기관이 해당 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조직한다고 증언하였다.

⁷¹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21일.

다. 그리고 1982년 김정일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활동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1992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제18조)고 규정하여 헌법상으로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각급 지방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검찰소장, 인민보안책임자, 검열위원회 위원장, 당 책임비서로 구성되는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집체적 지도기관이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서기장이 서기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각 인민위원회별로 사회주의법무생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 법무과가 있다고 한다. 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된 「지방주권기관법」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중 하나로 “해당 지역 안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장악지도한다”(제24조 11항)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법제정사에 따르면 주권기관의 법적용제를 확립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주권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규정」, 「도인민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규정」, 「시, 군인민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규정」 등을 만들었다고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규정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일군들과 공민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잘 하도록 지도·통제하는 비상설 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구성과 임무, 권한과 활동절차, 위법현상에 대한 심의절차와 제재형태를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특히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주권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제정·실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⁷²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의 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 집체적지도기관입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국가경제기관 지도일꾼들이 권력을 탐용하지 말고 모든 사업을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법무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토의하여 관할지역안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도록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매 시기 제시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따라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검열위원회와 검찰소를 비롯한 감독통제기관들에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보고받으며 제기된 문제들을 옹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⁷³

김정일의 논문에서 보듯이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첫째,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들을 검열하게 하거나 감독통제기관들을 망라하여 자기가 직접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검열사업을 조직·진행한다. 둘째, 관할지역 근로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교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및 경제사범에 대한 징계 처벌과 책벌방침을 결정한다. 넷째, 김일성 교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정 및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차이로 야기되는 각 기관간의 분규 및 오류사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는다.⁷⁴

⁷²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p. 240; 세종연구소 편, 『북한법 체계와 특색』, pp. 56~57.

⁷³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pp. 342~343.

⁷⁴ 장명봉, “김정일 체제 하의 법제정비의 동향과 평가.”

이와 같이 위원회는 여러 가지 법위반 사실 중 주로 국가경제기관의 지도일군 또는 공무원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탐오횡령 등의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전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모든 법위반 사실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관료주의에서 파생되는 지도일군 등의 법위반 사실을 심의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동 위원회는 스스로 법위반사실을 밝혀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법무과 이외에 조사기구를 따로 갖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검열기관이나 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의 제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심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또 재판소가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회적 교양처분에 처한 경우에도 사건기록이 동 위원회에 이관되며, 그에 따라 동 위원회가 처분대상자에게 부과할 사회적 제재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가 재판기관 등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행정적 제재와 동지심판회에 회부하는 것이다. 행정적 제재에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강직(降職), 면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무보수노동에 처하는 처분 등이 있다. 형사적 책임을 물을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소에 이송 조치한다. 결국 동 위원회는 동지심판회와 정규 재판소와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실질적인 사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⁵

끝으로 북한주민들의 처벌절차에 관여하는 또 다른 유사사법제도로 안전위원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중앙에는 중앙당 비서, 당조직지도부장, 사회안전부장, 국가안전보위부장, 중앙재판소 소장, 중앙검찰소 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시·군·구역 등 각급 행정구역별로 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지역 당책임비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 사법안전분야의 노동당 정책을 하달받아 사법안전기

⁷⁵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p. 645~647.

관의 기능과 역할을 통제·장악함으로써 사법안전기관의 활동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당위원회들은 사회안전사업과 사법검찰사업을 정상적으로 토론하고 사업방향을 바로잡아주며 사회안전기관들과 사법검찰기관들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지도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⁷⁶

구체적으로 안전위원회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심사, 감시, 숙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반김일성·김정일 세력, 반혁명세력 등 정치사범에 대한 처리방향과 심지어 형량까지도 지도하며, 사법·검찰업무에 대한 당적 지도 통제를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사법안전위원회는 위원으로 참석한 사법안전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업무처리방향을 협의한 후 그들에게 업무 처리방향을 지시·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⁷⁷

⁷⁶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54.

⁷⁷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p. 647~648.

IV

위법행위 형사처리절차

북한 형사소송법상으로 형법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처리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사→예심→기소→재판→판정, 판결 집행의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1. 수사·예심 및 기소

가. 수사

북한 형사처리절차에서 수사란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수사는 범죄의 단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자를 적발하고 그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기까지의 과정이다. 수사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만을 임무로 하기 때문에 활동범위는 제기된 형사사건의 범죄자를 찾아내며 사건해결의 기초가 될 증거로서 그 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을 제때 수집·보전하는 데 한정된다.⁷⁸

수사할 범죄자료를 취득한 수사원은 명시적인 근거에 따라 수사시작 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되, 수사시작 결정 24시간 이내에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구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권한)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다만, 범죄자를 적발한 후에는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승인 없이

⁷⁸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p. 331~332; 이백규,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하여 수색,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3조).

- ①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 발견되었을 경우
- ②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 ③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 ④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추적당하고 있을 경우
- ⑤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그런데 수사원이 위의 사유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려 할 경우 48시간 내로 구금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체포한 날부터 10일 내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내로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의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사건을 예심에 넘겨야 한다.

나. 예심

북한의 형사처리절차에서 특징적인 것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며 범죄자를 확정하여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남김 없이 정확하게 해명 확정하고 연루자들을 모조리

적발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는 것을 임무로 한다. 이와 같이 예심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예심은 수사기관 및 검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예심기관이 수사일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과 강제처분을 통하여 피심자에 대한 범죄의 유무 및 책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실을 밝혀내 기소 또는 사건기각의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실상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의 핵심부분에 해당된다.⁷⁹ 이를 위해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과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 수행에서의 역할과 책임의 정도 등을 밝혀내야 한다.

예심의 기간은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종결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개월 이내에 예심을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예심을 시작한 날로부터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데, 먼저 시(구역)·군 예심원과 도(직할시) 예심원은 도(직할시) 검찰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개월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심을 더 하기 위해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유기·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 예심은 20일 이내,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 예심은 7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로동단련형의 신설에 따라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 내로 종결해야 한다. 이 기간 중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

⁷⁹ 이백규,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로동단련형의 경우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히 인정될 때 예심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남한과 달리 체포영장을 검사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1999년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처분 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101조)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영장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 받은 48시간 이내에 예심시작 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변호인 선정권리를 공지해야 한다. 또한 형사책임추궁결정서 등본을 48시간 이내(구 형사소송법에는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 통지 후 48시간 내로 피심자를 심문해야 하며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의 경우에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다. 구류 중인 피심자의 심문은 예심장소에 호송하여 심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표 IV-1> 형사처리 중 구류 기간

구분	형별	기본 기간	연장 가능 기간	재판소에서 추가 예심 환송 시	비고
수사	10일 (검사의 승인)				-
예심	로동교화형, 사형	2개월	- 1차 1개월 (구형소법 2개월) 시(구역)·군 예심원, 도(직할시) 예심원은 도(직할시) 검찰소장의 승인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장의 승인 - 2차 1개월 (구 형소법 2개월) 중앙검찰소장의 승인	20일 연장	최장 4개월 * 구형소법에서는 최장 6개월
	로동단련형	10일	20일 검사의 승인	7일 연장	최장 1개월
기소	로동교화형, 사형	10일			* 구형소법 15일
	로동단련형	3일			-
제1심 재판	로동교화형	25일			* 구형소법 1개월
	로동단련형	15일			-
항의, 항고			10일		-
제2심 재판	로동교화형, 사형	25일			* 구형소법 1개월
비상상 소심, 재심			1개월		* 구형소법 1개월

그렇다면 예심기간 중의 구속처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사건조사를 방해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피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속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체포와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을 결정할 다음에 실시할 수 있다.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 사유를 밝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는 체포, 구속할 수 없는데(2004년 형사소송법에서 신설), 예심원은 체포영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 체포영장 발급의 방법을 통한 검사의 승인을 받아 구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다만, 임신한 피심자에 대해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구속처분에는 구류구속 처분, 자택구속 처분, 지역구속 처분의 3가지 형태가 있다. 구류구속 처분은 구류장에 수감하는 것을 말한다. 자택구속처분은 질병, 임신 등의 사정으로 피심자를 구류구속 처분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구속 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에 대해 예심원 또는 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어 있었다면 구속된 날부터 형기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형기 계산의 경우 구속처분의 세가지 모든 유형에 해당되는지 구류처분만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압수, 수색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해 압수와 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예심을 종결할 경우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 관련 기록을 열람시키고 이의 신청여부를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심원은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참가 하에 예심종결 수속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심을 종결한 날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 기소

기소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 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피심자를 재판소에 넘기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10일 안에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구 형사소송법에서는 15일). 그리고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 사건기록은 3일 안에 검토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기소기간에 상응하여 기소를 위한 피심자의 구류기간은 10일, 로동단련형은 3일이다.

그리고 범죄의 사건기록 검토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다.

- ①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가
- ②예심을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진행하였는가
- ③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검사는 예심을 충분하고 올바르게 진행하였을 경우 기소장을 작성하여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하는데, 기소장, 사건기록, 증거물을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심이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내게 되어 있다.

2. 재판

형법 위반에 따른 형벌 등 최종 범죄 확정을 위한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먼저 각급 재판소의 관할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판기구는 헌법을 근간으로 재판소구성법,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재판기구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한 부문의 특수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헌법 153조, 재판소구성법 제3조). 그리고 각급 재판소가 관할할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26조~제133조에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재판소의 관할대상

구분	관할 대상
인민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
도(직할시)재판소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의 1심 재판 도(직할시) 내 인민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의 제2심 재판 필요시 도(직할시) 내 인민재판소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의 직접 재판
군사재판소	군인,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철도재판소	철도운수부문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의 제2심 재판 필요시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의 직접 재판

가. 제1심 재판

재판관계자의 참가 하에 범죄사건을 심리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정확히 확정하고 법률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1심 재판의 임무이다. 1심 재판은 기본적으로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 재판소를 판사 3명으로 구성하는 ‘특별한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근로인민대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⁸⁰

북한도 재판을 공개(헌법 제158조)하고 독자적으로 법에 의거 재판활동을 수행한다고 재판의 독자성을 보장(헌법 제160조, 형사소송법 제272조)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헌법 제158조에서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71조에서 첫째,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둘째,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경우 재판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독특한 재판제도로써 현지재판을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현지 재판의 조직)에서는 “재판소는 균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 규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99년

⁸⁰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형사소송법의 현지재판 조항(제179조)에서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해당 관계자들을 참가시켜 교훈을 찾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있다.

현지공개재판은 하나를 쳐서 수백수천의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형식의 하나입니다. 현지공개재판을 잘하면 재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줄수 있습니다. 사법검찰기관들에서는 현지공개재판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조직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위법현상들과의 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⁸¹

형사소송법 제270조에 따라 제1심 재판심리(일반적 구성의 경우)의 재판관계자는 판사(재판장), 인민참심원, 검사, 변호인, 피소자 이외에 재판서기가 참가(형사소송법 274조)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78조에서 재판심리시 검사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재판심리과정에서 피소자는 변호를 받을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는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158조)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추궁 결정을 받은 때부터 사실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재판심리에 참가하는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 평가되며 그의 법적 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9조)

⁸¹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p. 316.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제2조)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옳게 분석 평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제9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 ①형사사건기록을 열람(형사소송법 제118조)할 수 있으며 피심자, 피소자와 담화하거나 서신거래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17조).
- ②중인, 감정인과 담화할 수 있다.
- ③변호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인하며(형사소송법 제119조) 증거를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에 앞서 재판소에 증거를 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변호에 필요한 증거문서, 증거물의 열람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검사 또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 ⑥말은 사건의 제1심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를 심리하는 제2심 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재판소는 25일까지 피소자를 구류할 수 있다. 그런데 로동단련형에 해당될 경우 피소자의 구류기간은 15일까지이다. 이와 연계되어 제1심 재판소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내로 재판심리를 끝내도록 되어 있다. 로동단련형에 해당될 경우 피소자에 대한 재판심리는 사건기록 접수 10일 내에 종결해야 한다. 특별히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사건은 재판심리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소는 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제1심 재판은 재판준비단계와 재판심리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상 재판준비는 기소된 사건기록을 받은 재판소가 이를 검토하여 재판심리절차에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심리절차에 회부할 경우에 재판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절차를 지칭한다. 기소를 하면 사건이 자동적으로 재판에 넘어가도록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문제를 독자적으로 판단 처리하는 중간단계를 두고 재판소에 그것을 맡기는 것은 계급투쟁을 정확하게 진행하며 범죄사건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⁸²

먼저 재판준비에서 판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 ①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 ②기소에 근거가 있는가
- ③인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가
- ④근거없이 범죄의 공모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 ⑤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 신설)
- ⑥피심자의 신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⑦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판사는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어 재판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재판심리는 형사사건의 취급

⁸²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pp. 183~184; 이백규,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에서 재인용.

처리를 결속짓기 위하여 수사와 예심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중국적으로 검토하며 그에 기초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밝히고 확정하며 피소자를 심판하는 단계이다.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전에 검사, 피소자, 변호인에게 재판심리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신 소송법에서 추가, 307조) 심리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피소자 심문, 증인심문, 재심문 혹은 대질심문, 감정의뢰와 감정인의 심문, 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 현장검증 및 증거자료의 확인, 새로운 증거수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 것이 더 없는 지 묻고 사실심리를 종결한다고 통지한다. 사실심리가 끝나면 검사, 손해보상청구장, 변호인의 순서로 논고와 변론을 실시한다(논고와 변론 별도의 설명조항으로 신설). 논고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 규탄하고 유죄가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논증하며 기소된 형법조항의 형법을 적용하도록 제기”(형사소송법 제326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변론은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과 목적, 위험성의 정도, 피소자의 개준성 정도를 근거 있게 밝히면서 형벌 결정 시 참작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피소자의 행위가 무죄로 인정될 경우 무죄로 되는 근거를 정확히 밝힌다”고 설명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그런데 여전히 사실심리 종결과정에서 균중노선의 원칙이 반영되고 있다. 먼저,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형사소송법 제324조)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 심리에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참가한 경우에는 그가 먼저 피소자의 죄행을 폭로규

탄하게 한다”(제23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필요시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말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5조)고 표현을 완화하고 있다.

재판장은 피소자의 최종진술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게 된다.

- ①기소된 범죄가 있었는가
- ②범죄를 피소자가 저질렀는가
- ③범죄의 표징을 갖추었는가
- ④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등 (332조)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하여 판결을 채택하게 된다. 판결과 재판심리 시 판정의 채택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심리절차에서는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소송형식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인민대중에게 교훈을 주는 정치선전적, 사상교양적 성격이 강조된다. 따라서 검사와 변호인은 재판심리에 참가하여 기능을 서로 달리하여 각각 소추의 기능과 변호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판단과 해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판소와 힘을 합침으로써 재판에서 당의 사법정책이 정확하게 관철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그들 서로가 재판소 앞에서 시비를 가르고 다투질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⁸³

판결의 내용은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사회적 교양처분을 하는 판결인 유죄판결과 범죄가 없다는 판결인 무죄판결로 구분

⁸³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pp. 193~194; 이백규,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에서 재인용.

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판결서 작성시 판결서에는 피소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조항과 형벌, 사회적 교양처분 등을 적시하며 상소절차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나. 제2심 재판

제2심 재판은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 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항의하려는 검사는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로 항의서를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제1심 재판소는 항의기간이 지나면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항의한 검사의 상급검찰소에 보내야 한다. 항의서를 접수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10일 내로 검토하여 동일 급의 재판소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거나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상소를 하려는 피소자, 변호인은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로 상소장을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심 재판소는 상소기간이 지나면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보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소, 항의가 제기된 판결, 판정에 대해서는 집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중앙재판소 제1심 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 제2심 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에 대해서는 항의와 상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2심 재판소는 제1심 재판소와 달리 판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안에 심리하여

해결하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제2심 재판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 변호인을 참가시키도록 되어 있다(구 형사소송법은 1개월). 제2심 재판에서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의 내용심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심 또는 제1심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의 요구와 절차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 없는 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장은 재판심리 시작을 알리고 제1심 재판소가 재판한 범죄사건의 내용과 판결, 판정, 그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사유를 보고하고 검사, 변호인, 재판소 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뒤 재판소 성원들과 협의를 통해 판결을 확정하게 된다. 판정서가 채택되어 낭독할 때 검사도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도 상소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와 달리 3급 2심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심 재판에 대하여 한 차례 더 인정되는 데 그치고 중앙재판소가 제1심으로 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종결되게 된다. 그런데 중앙재판소는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이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재판할 수 있으므로(제129조), 경우에 따라 상소제도는 형해화할 여지도 있다. 북한에서 상소제도는 소송관계인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측면보다 하급재판소들의 판결·판정 또는 예심기관의 수사활동에 있어서 당의 사법정책이 정확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를 보장하는 데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⁴ 상소제도는 형사재판이 당 정책과 그 구현인 법령의 요구에 맞게 내려지도록 보장할 데 대한 요구를 철저히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보장조치의 하나로서 상급재판소들로 하여금 사법정책이 정확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급재판소들의 재판사업

⁸⁴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 368; 이백규,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

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통제를 수행할 데 대한 요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⁸⁵

다. 비상상소심과 재심

북한의 형사소송법상의 비상상소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제384조)을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비상상소제도를 “법적 효력이 생긴 확정 판결 및 판정의 안정성과 법적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거기에 그대로 둘 수 없는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 그것을 고쳐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우리 당 사법정책이 통일적으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상상소와 재심제도에 관해 이것이 이미 확정되어 법적 효력을 나타낸 판결이나 판정에 대하여서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교시나 그것을 구현한 국가법령과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이를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상소와 재심의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비상상소는 법령위반을 시정하여 개개의 소송절차에서 사회주의적 정의 및 합법성을 실현하고 사법의 통일성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피고인의 이익, 불이익의 어디에도 귀착할 수 있다.⁸⁶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제기할 수

⁸⁵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pp. 223~224; 이백규,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에서 재인용.

⁸⁶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p. 240; 이백규, “북한형사소송법의 평가”에서 재인용;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p. 374.

있으며,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상소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하는데, 비상상소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리를 끝내도록 되어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새로운 범죄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제403조)을 재심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심은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판결의 잘못을 시정하는 제도로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비상상소와 달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개별적인 부당한 판결을 고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제도는 피소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판결, 사건기간판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비상상소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재판감독절차라고 할 수 있다.⁸⁷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2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① 판결, 판정의 기초로 하였던 증거가 거짓이라고 알려진 경우
- ②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재판할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새로 알려진 경우

재심은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제기할 수 있다. 재심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재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하며, 재심의 제기 사유가 되었던 범죄를 심리하여 확정하면서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형벌을 옳게 적용하였는가를 심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심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리를 해결해야 한다.

⁸⁷ 위의 책, p. 378.

V

형사처리 적용 실태

북한에서는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일까? 정치에 대한 법의 종속, 당의 영도라는 근본적인 인식들은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도 형벌권 행사에 법적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 오고 있다.⁸⁸ 그렇다면 이러한 형사처리 규정 자체는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국내입국 새터민들의 탈북 시점을 고려할 때 1차적으로 2004년 개정 이전의 법률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형사처리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은 200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제8조)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의 신설은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이 실제로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가?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한 인민보안성, 국가안정보위부, 인민무력부 관계자들은 사법관련 일군들이 인신 처리 과정에서 구타 등 인권유린 행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절차는 준수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들이 인권유린을 당한 일반새터민들과 달리 법을 집행했던 입장에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그것을 위반했다고 증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증언 과정에서 절차가 어느 정도 준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리 법일군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제기나 감시제도 등을 통하여 드러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위부원 출신의 새터민 윤○○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사건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⁸⁸ 윤용규, “남북한 형법 비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엮음, 『남북한 법제 비교』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3), pp. 204~205.

한다고 한다. 1997년 11월 경 형사소송법 시행 세칙이 문건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형법에 제정되어 있지 않던 범죄를 포함시켜 ‘어떤 범죄는 어떻게 하라’는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한도가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⁸⁹ 보위부 자료분석실에서 형사처리절차 업무를 관여하였던 새터민 이○○에 의하면 형법 조문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⁹⁰ 본인이 억울한 사정으로 체포되어 형사처리절차를 거쳐 6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받은 새터민 장○도 자신에 대한 형사처리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⁹¹ 이러한 증언과 형사처리 절차 자체의 인권요소 미비를 논외로 하더라도 형사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위반이 발견되고 있다.

1. 수사·예심

가. 관할권의 실태

1999년 형사소송법 제74조에는 “반국가범죄사건은 국가보위기관 예심원이 하며 일반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사회안전기관 또는 검찰기관 예심원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국반역죄 등 반국가범죄의 수사와 예심은 국가안전보위부, 일반범죄사건의 수사와 예심은 인민보안성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보위부원 출신, 인민보안기관(구 사회안전부) 분주소 보안담당, 일반범죄로 로동교화형을 언도받은 새터민, 강제송환을 경험하였던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

⁸⁹ 새터민 윤○○,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4월 19일.

⁹⁰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0일.

⁹¹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면 형사소송법상의 일반범죄와 정치범죄의 구분 및 범죄에 따른 관할기관의 구분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보위부에서 형사처리절차에 관여하였던 새터민 이○○에 의하면 정치범은 보위부, 일반범죄는 인민보안성에서 관할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범죄와 일반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보위부에서 우선 관할한다고 한다.⁹² 새터민 장○도 보위부는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범죄는 모두 관여한다고 증언하였다.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일반범죄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어 강간·강도를 했더라도 정치적 성격과 연관성을 띠지 않을 경우 보위부가 담당한다고 한다. 정치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민보안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⁹³ 이는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대한 관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장○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가 종전에는 군대 내에서 제기되는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김정일이 사회 검찰기관과 안전부도 못 믿겠다고 판단하여 일반 민간인 사건 처리 권한도 부여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⁹⁴ 반면 군대내 보위부에서 형사처리에 관여하였던 새터민 김○○은 관할이 엄격히 구분된다고 증언하였다.⁹⁵ 따라서 김정일의 지시로 범죄의 관할권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 증언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증언들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할권 문제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탈북자가 중국 변방에서 체포되어 송환되면 정치범죄를 관할하는 지역 보위부

⁹²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0일.

⁹³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⁹⁴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⁹⁵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21일.

에서 탈북동기를 집중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북한당국이 우선 탈북행위에 대해 조국반역죄라는 정치적 성격의 범죄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위부는 1차적으로 탈북동기가 조국 반역죄에 해당하는지 생계를 위한 단순 탈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 탈북기간 동안 남한사람 또는 기독교인과의 접촉여부, 남한입국 시도여부, 인신매매 연루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위부의 조사 결과 전자에 해당하면 계속하여 보위부가 관할하고 후자로 결정되면 인민보안기관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예심의 관할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⁹⁶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분류된 새터민의 경우 시·군보위부에서 도보위부로 이관되어 예심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새터민 최○○의 증언에 의하면 보위부 구류시 19세 정도의 남자가 수용되어 있었는데, 중국 변방대에서 종교문제로 체포되어 북한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당시 보위부 지도원으로부터 도보위부로 이송되는데, 도보위부로 이송될 경우 예심을 거쳐 대부분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⁹⁷

검찰기관에서는 행정경제사업과 관련된 일반범죄의 수사와 예심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9년 형사소송법의 경우 일반범죄사건의 경우 사회안전기관 또는 검찰기관이 한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 일반범죄사건은 인민보안기

⁹⁶ 줄고, “탈북자와 북한인권”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5. 6. 24).

⁹⁷ 새터민 최○○,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2월 19일.

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 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사건은 검찰기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감시법에서는 “감시는 재정, 설비, 물자, 품질 감독기관을 비롯한 행정경제부문의 감독통제기관이 검열, 단속, 통제와 처리사업을 법의 요구대로 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다.

청진시 부윤구역 군중외화벌이 사업소 지배인을 지낸 새터민 장○은 경제부문에 대해 검찰이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증언하였다. 본인은 외환관리 위반행위로 검찰에서 수사와 예심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일본에 성계를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가의 외환관리 법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죄목으로 검찰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외국에 수출할 경우 서류상으로 무역은행을 통해 외화를 벌었다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역은행을 통해 외화를 벌었다는 통지서가 작성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떼 후 나머지를 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엔을 수령하였다는 죄목으로 조사받았다. 이렇게 직접 엔을 수령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입하여 계속 장사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자본주의 시장방법으로 직접 거래하여 이윤을 남겼다는 죄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외환관리 질서 위반 혐의로 1993년 2월 7일 중앙검찰소에서 청진시를 검열하는 과정에서 1달 동안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안전부 사무실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16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고 한다. 2월 28일 일본으로부터 직접 받은 엔화를 국가에 납부하고 중앙검찰소 차원에서는 석방되었다. 그런데 청진시 라남구역 검찰소에 조사문건이 이관되었다. 중앙검찰소에서 해명 받고 나와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는데, 라남구역 검찰소에서 사건을 취급하고 4월 23일~5월 23일

라남구역 검찰소 예심원이 예심(진술서 작성, 증인 진술 첨부 등)을 실시하였다고 한다.⁹⁸ 그런데 새터민 이○○은 백화점 공급 상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구역 인민보안기관 감찰과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⁹⁹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경제와 관련된 일반범죄를 검찰과 인민보안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고 있는 지 앞으로 파악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군과 관련된 범죄 행위는 군사 검찰기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새터민 김○○은 사단급 보위부에서 반간첩 활동과 군 내부 범죄 관련 수사와 예심에 관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군단급 보위부에 검찰조직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령부급부터 별도의 독립적인 검찰소와 재판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보위부 수사지도원이 범죄혐의를 조사하고 수사과장이 서류를 비준하여 보위부장의 수표로 사건화가 공식화된다고 한다. 사단 보위부장이 군단 보위부에 보고하면 군단 구류장에 수감한다고 한다.¹⁰⁰

나. 수사·예심 과정

인민보안서 분주소에서 보안담당을 하고 경제 관련 위법 행위로 실제 로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새터민 장○은 수사에서 예심 종결까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안전부 감찰과에서 범죄 혐의의 의심이 갈 경우 증인의 증언을 포함,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범죄내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사과와 합동으로 작전을 전개한다. 그

⁹⁸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⁹⁹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3월 11일.

¹⁰⁰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21일. 다만, 철도부문의 경우 실제 경험한 새터민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지 못하여 실태를 정리하지 못하였다.

리고 형법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예심과에 이첩한다고 한다. 담당 예심원은 구류장에 넣을 수 있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부장(현 인민보안서장)의 수표(결재)를 받아 10일까지 구류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연기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 1달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구류 상태에서 예심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혐의가 발견되기도 하며 예심원이 현지에서 재조사, 검토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예심은 정확하게 재료를 파악하여 형법 적용 여부를 확정하는 단계라고 한다. 담당 예심원은 형법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부장에게 문건을 제출하고 안전부장 지휘 하에 부부장, 감찰과장, 예심과장, 수사과장이 사건을 협의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로동교화형에 해당된다고 결정되면 지휘·감독 통제 권한이 있는 검찰소장의 합의 하에 안전부장이 수표한 문건을 시(군·구역) 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안전위원회에서 안전부장이 보고하고 위원회가 범죄를 인정하면 사건 기록에 결정 날짜를 기록하고 그날부터 머리로 삭발하고, 범죄자로 취급하여 형기를 계산한다고 한다. 안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사건이 성립되지 않고 석방된다고 한다. 검찰소가 예심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 자체가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검찰소장의 수표를 받아 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¹⁰¹

장○의 증언을 통하여 본문의 III장과 IV장에서 살펴본 일반범죄의 형사처리절차가 기본적으로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의 증언에서 형사처리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한 유사사법기관으로서 안전위원회라는 조직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사·예심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안전위원회가 판단한다는 것이다. 안전위원회를 통하여 형사처리과정에서 당

¹⁰¹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적 영도의 형태가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교차 검증 등을 통해 형사처리과정에서 안전위원회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범죄의 경우 보위부에서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 보위부원 새터민 윤○○은 다음과 같이 처리과정을 설명하였다. 현행범이 아닐 경우 정보원을 통해 반체제, 사상동향 의심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반체제활동 증거가 수집되면 시·군보위부에서 사건을 조사하는데, 본인 진술, 증인진술 등 증거자료와 감시기록을 문서화해서 시·군보위부에서 ‘사건제기문건’을 작성한다고 한다. 구류보존처분결정서, 구속영장 등 ‘사건제기 문건’을 작성하여 도보위부에 상신한다고 한다. 도보위부에서 검토 후 중앙에 보고하면 국가안전보위부 내 검찰국에서 범죄가 인정될 경우 구류보존처분결정서를 승인해 준다고 한다.¹⁰² 윤○○의 증언을 통하여 현행범이 아닐 경우 수사·예심, 특히 예심을 위해 구속할 경우 도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상급 조직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새터민 이○○에 의하면 형사처리 절차에 관여하는 남포시 보위부 조직은 반탐처, 수사처, 통신처, 예심처, 자료분석실이라고 한다. 우선 반탐은 위법 행위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성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모든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성과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혐의자는 두려워 거짓 자백을 하기도 한다. 자료분석실은 반탐에서 작성한 범죄 행위에 대해 상담 등을 통해 혐의자가 실제로 저질렀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 반탐과에서 작성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주변인물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수사과정에서 필적 감정, 지문 채취, 가택 수사 등의 범

¹⁰² 새터민 윤○○,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조사한다고 한다. 이때 통신처도 합세하여 도청 등의 기록을 조사한다고 한다. 그리고 예심에서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여 형법에 따라 조항을 적용하여 형량을 정한다고 한다. 범죄자는 예심원을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한다. 예심원은 범죄자와 가깝다. 반탐에서 작성한 모든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심원과 반탐과 직원은 알력이 있는데, 감정이 오래가지 않도록 반탐과 직원은 자주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적발하는 성과 때문에 반탐과 직원의 승진이 많다고 한다.¹⁰³

다. 구속처분 실태

인민보안기관의 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구금하는 구류장은 감찰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¹⁰⁴

첫째, 구속 처분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 지 여부이다. 새터민 장○은 담당 예심원은 구류장에 넣을 수 있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부장(현 인민보안서장)의 수표(결재)를 받아 10일까지 구류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구속처분 과정에서 당 안전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한다고 한다. 4월 23일 중앙검찰소 자료에 대해 라남구역 안전위원회에서 범죄로 통과되었고 그 즉시 식발 구류장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즉, 안전위원회 결정 시점이 구속처분의 시점이라고 한다.¹⁰⁵ 장○의 증언은 구속 처분은 검사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다는 형사소

¹⁰³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0일.

¹⁰⁴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4월 22일. 마찬가지로 노동단련대도 감찰과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¹⁰⁵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송법의 규정과 다르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안전위원회 회부는 검사의 구속 결정을 사실상 추인하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된다.

둘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류기간의 준수 여부이다. 일반 경제범죄로 형사처리 절차를 거쳤던 새터민 장○은 담당 예심원이 구류장에 넣을 수 있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부장의 결재(수표)를 받아 10일까지 구류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만약 연기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 1달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로 본인은 라남구역 검찰소 예심에서 1개월을 조사 받은 후 다시 도 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1개월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⁶ 장○의 증언은 필요할 경우 예심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도 검찰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1999년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새터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예심을 위해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한다. 그런데 보위부 구류장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 비밀자료를 모두 들추어낼 때까지 몇 년 동안이고 계속 조사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¹⁰⁷ 반면 보위부원이었던 새터민 이○○은 정치범의 경우 보위부 구류장에서 2~3달 정도 구류한다고 증언하였다.¹⁰⁸

허만호 교수는 고발장 준비를 도와준 새터민들의 경우, 예심기간이 모두 1999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최장 6개월을 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⁰⁹ 1999년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예

¹⁰⁶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¹⁰⁷ 북한민주화네트워크, 『Keys』, 통권 47호 (2004. 11).

¹⁰⁸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0일.

¹⁰⁹ 허만호 미발표 논문,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제의 현황과 전망” (2005)에서

심기간은 2개월이고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형사처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처분 기간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성격의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구속처분 기간에 차별을 두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보위부 구류장의 구속처분 기간에 대한 보다 많은 증언의 수집이 필요하다.

공식적으로 구류처분 결정 이후에는 법률을 준수한다는 증언이 주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인신 구속상의 유린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터민 장○은 외환관리 질서 위반 혐의로 1993년 2월 7일 중앙검찰소에서 청진시를 검열하는 과정에서 1달 동안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안전부 사무실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16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요해단계에서는 구류기간에 구애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구류장에 들어가면 기한을 준수한다고 한다.¹¹⁰ 장○의 증언을 통해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책임추궁’ 결정 이전에 혐의자에 대한 자유권이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실상 파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미 구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로동교화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기 계산의 적용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당 예심원은 형법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부장에게 문건을 제출하고 안전부장 지휘 하에 부부장, 감찰과장, 예심과장, 수사과장이 사건을 협의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로동교화형에 해당된다고 결정되면 지휘·감독 통제 권한이 있는 검찰소장의 합의 하에 안전부장이 수표한 문건을 시(군·구역) 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안전위원회

인용.

¹¹⁰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에서 안전부장이 보고하고 위원회가 범죄를 인정하면 사건 기록에 결정 날짜를 기록하고 그날부터 머리도 삭발하고, 범죄자로 취급하여 형기를 계산한다고 한다.¹¹¹ 장○의 증언을 통해 로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피소자가 판결 이전에 구류되어 있을 경우 로동교화형 기간에 계산하여 넣는다(1999년 형법 제25조)는 조항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형사처리는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정치적 성격을 띠지 않았다고 보위부 조사에서 판명된 경우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구금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 실제 현실이라고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사례 1>

1차 탈북: 회령 보위부 구류장에서 열흘간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회령시 안전부에서 일주일 구류된 후 함경북도 도집결소로 이송되어 5일간 구류되었다. 이후 삼지연 안전부로 이송되어 안전부 구류장에서 25일간 구류된 후 석방되었다.

2차 탈북: 회령 보위부에서 1달간 구류되어 있었다. 이후 도집결소로 넘어 갔다가 부모가 거주하는 연사군 안전부로 이송되었다. 마침 안전부 정치부장과 친분 관계가 있어 안전부 정치부장의 담보로 노동단련대를 가지 않고 석방될 수 있었다.¹¹²

¹¹¹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¹¹² 새터민 최○○,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2월 19일.

<사례2>

새터민 박○○: 도문에서 강제송환되었는데, 온성군 보위부에서 1차적으로 1달간 조사를 받았다. 이후 온성군 안전부에서 1달간 구류된 이후 청진에 있는 도 집결소로 이송 도중 탈출하였다.¹¹³

<사례 3>

새터민 장○○: 장현에서 체포→도문→남양→온성군 보위부에서 6일→온성군 보안서→온성군 단련대 6일→청진 도집결소 이송 직전 재탈출¹¹⁴

<사례 4>

새터민 이○○: 무산군 보위부→본인 근무 광산보위부(3일)→광산 안전부(11일)→군 안전부(3일)→노동단련대(3달)

<사례 5>

새터민 한○○: 온성군 보위부(10일)→온성군 단련대(20일)

반면,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새터민의 증언을 토대로 발간하는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인, 교회, 외국인과 관련 있는 정치범으로 분류될 경우 보위부 대상으로 상급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 3~6개월 기간 수감하였다가 관리소로 넘기거나 2~3년간 교화형에 처한다고 한다.¹¹⁵ 이러한 사실은 앞의 증언과 달리 강제 송환된 탈북자의 경우 정치범으로 분류되더라도 구속 처분 기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¹¹³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3월 11일.

¹¹⁴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3월 11일.

¹¹⁵ 북한민주화네트워크, 『Keys』, 통권 25호 (2002. 6).

2. 재판 및 집행상의 실태

가. 재판 관할

재판관할과 관련하여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을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범죄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가 재판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1999년 형사소송법 제185조). 이와 관련하여 새터민 김○○은 자기 거주 지역에서 재판한다는 증언을 하였다.¹¹⁶ 이러한 증언을 통해 관할지역 내의 범죄 관할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지역에서 재판을 실시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다는 점이 파악되고 있다.

정치범의 경우 수사·예심은 보위부가 관할하지만 재판은 재판소가 관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판도 보위부에서 담당한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 보위부원 출신 새터민 윤○○에 의하면 도 보위부 피의자 심문 등 예심을 거쳐 사실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에 보고한다고 한다. 검찰국에서 범죄행위가 확실하다고 결정할 경우 예심기관이 있는 현지에서 재판을 실시한다고 한다. 보위부 검찰국 검사가 판사로서 중앙재판소 명의로 판결하는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며, 형법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가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와 평생 수감 여부도 보위부가 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 삼는 기준문건은 없다고 한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관련 간부들이 사건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용범위, 수용기간 등을 결정한다고 한다.¹¹⁷ 마찬가지로 보위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새터민 이○○는 예심이 끝나면 국가안전보위

¹¹⁶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2월 19일.

¹¹⁷ 새터민 윤○○,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4월 19일.

부 검찰국에서 검사가 내려와 최종적으로 판결한다고 한다. 남포시의 경우 남포 시보위부에서, 일반 시군의 경우 도보위부로 이관하고 도보위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 검사가 내려와 판결한다는 동일한 증언을 하였다. 결국 정치범의 경우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¹¹⁸ 이와 같이 보위부원들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이 재판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반면 새터민 안혁은 조사가 끝나면 재판절차 없이 피의자는 ‘범죄자’가 되어 “죽을죄를 지었지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배려로 ○년간 혁명화 지역으로 가게 된다”고 말한 뒤에 수용소로 이송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¹⁹ 이와 같이 정치적 범죄의 성격에 대해 보위부원들도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증언과 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증언이 혼재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과 관련된 범죄사건의 재판관할의 문제이다. 새터민 김○○에 의하면 사령부급부터 검찰소와 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군단급에는 보위부 검찰국 내에 재판 담당부서가 존재한다고 증언하였다. 그에 따르면 보위부 수사지도원이 범죄혐의를 조사하고 수사과장이 서류를 비준하고 보위부장의 수표로 사건화가 공식화된다고 한다. 사단 보위부장이 군단 보위부에 보고하면 군단 구류장에 수감한다고 한다. 군단 보위부 내 검찰에서 1주일 내로 구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담당검찰원이 법에 근거하여 재판을 실시한다고 한다. 즉, 군단 검찰 부서 내에 재판담당자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큰 사건일 경우 인민무력부로 보낸다고 한다.¹²⁰ 이러한 증언에서 보듯

¹¹⁸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0일.

¹¹⁹ 허만호 미발표 논문,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체제의 현황과 전망”에서 인용.

이 군대 단위별 재판관할의 실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치범과 군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판에 대한 당적 통제의 문제이다. 사건에 대한 재판은 사전에 시군당 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검토 의견 제시후 재판을 실시한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¹²¹ 다시 말해 앞에서 서술한 안전위원회가 구속처분 결정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증언이다. 또한 새터민 이○○는 당 책임비서가 재판소 뒤에서 ‘내리먹일 권한이 있다. 당일군이 지시하면 법기관이 듣게 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다.¹²²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안전위원회 등 당 기관의 관여 여부와 구체적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 재판심리 및 판결

먼저 재판 기간의 문제이다. 새터민 장○에 의하면 검찰에서 기소한 후 재판소의 담당판사가 1달간 ‘재료해’를 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을 듣는 등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1999년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의하면 재판소는 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기일을 정하고 있는데, 장○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다. 장○은 재판심리 과정에서 재판소는 증인을 소환 통보할 권한이 있는데,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본인은 청진시 청암구역 임곡2동에 소재한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

¹²⁰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21일.

¹²¹ 새터민 윤○○,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4월 29일.

¹²²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3월 11일.

데 자신의 재판 시 6명의 증인이 출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은 자신과 같이 일하는 기업소 직원과 거래 단위 사람이었다고 한다.¹²³

재판심리 단계에서 1999년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피소자에게 재판소 성원과 검사, 재판서기 등을 알려주고 교체 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다. 새터민 장○은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불리한 검찰소 검사의 교체 문제를 재판장에게 제기하였다고 한다. 장○의 경우 4월 23일~5월 23일 라남구역 검찰소 예심원이 예심을 실시(진술서 작성, 증인 진술 첨부 등)하였는데, 1달 동안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자 1달간 구류를 연장하였다. 원래는 도 검찰소에서 취급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예심을 하고 도검찰소의 수표를 받아 도검찰소를 거친 것처럼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6월 23일 한달 만에 함북도 재판소에 이관하여 재판장과 대면할 때도 검찰소를 거치지 않은 것을 알았다. 이에 따라 장○은 재판 시 검찰소 검사와 언쟁을 하였고 재판소 소장에게 교체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소 소장이 판결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교체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한다.¹²⁴

판결, 판정은 제1심 재판의 경우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원칙적으로 구성되는데, 협의를 거쳐 다수결에 의해 합의방식으로 판결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6년의 로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새터민 장○의 증언에 의하면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변호사가 합의하여 판결을 결정한다고 증언하였다. 새터민 현○○도 동일하게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재판장,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이 협의하여 판결을 결정한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¹²⁵ 그런데 실

¹²³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¹²⁴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제로 인민참심원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형법 조항에 의한 유무죄 여부와 형벌의 유형 및 형기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지에 대해 인민참심원 출신의 새터민의 증언을 청취할 수 없어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새터민 장○은 변호사의 변론절차에 대해서도 증언하였다. 원래 장○은 검찰에서 기소 시 13년형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소 성원, 검사, 변호사가 합의에 의해 형량을 정한 다음 각본에 따라 변호사가 변론하여 감형을 요청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미리 합의에 놓고 각본에 따라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형량을 감하여 주도록 범죄자 편에 서서 변론을 하고 재판장이 변호사가 변호하였기 때문에 감형한다고 선고한다고 한다.¹²⁶

논고와 변론 절차를 거쳐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의로 형법 조항을 제시하면서 형을 선고한다고 한다. 새터민 장○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재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몇)조에 근거하여 피고 장○에게 6년 로동교화형을 준다”고 판결문을 낭독하였다고 한다. 또한 상소 기일도 낭독하여 준다고 한다.¹²⁷ 이와 같이 형량은 형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판결문이 작성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일치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는데, 진위 여부에 대해 보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과 요원이 재판소 문건을 가지고 와서 형량 등 재판 판결문을 읽어주고 교화소로 보낸다는 것이다.¹²⁸

¹²⁵ 새터민 현○○,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3월 11일;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¹²⁶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¹²⁷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좋은벗들의 인터뷰 시 도강죄로 회령 전거리에 수감되었던 증언자는 수감되었던 수감자들의 형량이 최소 6개월에서 최고 15년이라고 증언하였다고 한다. 이는 1999년 형법 제24조 “로동교화형의 기간은 6개월부터 15년까지로 한다”는 조항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형량 결정 시 형법 조항이 실제로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증언자 본인과 복역한 20명 중 최고 형량자는 인신매매죄로 13년을 언도받았다고 한다.¹²⁹

이상의 내용은 일반범죄에 대한 재판 실태의 일부이고, 정치범죄의 경우 재판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앞의 관찰부분에서 보았듯이 재판소가 관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소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일부 새터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공개처형의 경우 형법의 어떤 조항에 의해 집행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범죄 등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이 아닌 포고문이 언도의 기준이 된다는 증언도 있다. 새터민 윤○○은 공개처형의 경우 형법 이외에 포고문에 준해서 재판한다고 증언하였다. 포고문에는 어떤 항목은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5년~1998년 8개 정도의 포고문이 하달되었다고 한다. 내용과 성격에 따라 인민보안성, 국방위원회 등 발주기관이 다양하다. 정해진 시한이 없으므로 그 당시에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터민 박○○도 하달되는 사회안전부 포고문에 포고문을 어긴 자는 총살 혹은 로동교화형 몇 년 이상에 처한다고 형량이 규정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다. 예를 들면 공장기업소 부품 절도 판매,

¹²⁸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4월 22일.

¹²⁹ 좋은벗들, 『월간 오늘의 북한소식-North Korea Today』, 제2호 (2004. 10. 6).

내부적 유언비어 유포, 전화선 절단판매, 철도은행 지장 초래 시 사형 등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내용과 성격에 따라 하달기관이 다양하다고 한다.¹³⁰ 이상의 증언에서 보듯이 이러한 포고문 존재의 사실 여부 및 공개처형을 포함한 형사처리과정에서의 기능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보완조사가 필요하다.

형사처리 과정에서 계급노선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토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언이 있다. 새터민 이○○은 보위부 수사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명확해지면 인민보안사에서 혐의자 가계기록부를 가져 온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부는 형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조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형벌 부과시 성분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가족 중 당원이 많으면 환경이 좋아 교양·개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참작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처리 시 보위부 참고규칙들이 있는데, 당원 9명 이상인 집안일 경우 3년 형을 감하여 준다고 한다. 그리고 김일성 표창, 수훈자도 참고한다고 한다.¹³¹ 따라서 법적 제재보다는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는 형사정책상 자의적 판단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형사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계급노선이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 판결·판정의 집행

판결 집행과정에서 형벌 집행정지 사유의 준수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에서 형집행정지 사유로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중병 또는 정신

¹³⁰ 새터민 윤○○,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4월 19일;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4월 22일.

¹³¹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0일.

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임신한 자가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병보석으로 병원 또는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관할 사회안전기관이 한다(1999년 형사소송법 제299조)”고 규정되어 있다. 새터민 장○은 회령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몸이 아파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병보석을 받으면 병원에서 직접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역 내에서 이동할 수 있지만 대신 안전부가 감시한다고 증언하였다. 장○의 증언을 통해 병보석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¹³² 다만, 강제 송환된 임신 여성 탈북자의 경우 이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형 집행의 문제이다. 1999년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의하면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공개처형의 경우 이 절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결, 판정집행법 제32조 사형의 방식에 대해 “총살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살 등의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형 방식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터민들은 총살 이외의 교수형이 가장 무거운 처형방식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대사, 특사에 대해서도 김일성, 김정일 생일 등 국가 명절 시 대사를 통해 석방한다고 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사 상무위원이 각 지방교화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교화소 수감자가 1차 대상, 병보석이 2차 대상 등 기준이 있는데, 범죄 중 살인죄, 강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¹³³

¹³²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라. 현지공개재판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균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공개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999년 형사소송법 제179조). 공개처형은 민심이 좋지 않을 때나 내부가 불안정할 때 일반범죄자를 대상으로 체제를 약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을 실시한다는 증언¹³⁴에서 보듯이 공개처형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형법상 사형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언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와 절차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서 죄목을 낭독하고 사형을 언도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공개처형 현장에서 인민보안성 책임자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판결문 자체는 중앙재판소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한다.¹³⁵ 또 다른 새터민은 재판소에서 나온 판사가 죄목을 설명하고 형을 언도한다고 증언하였다.¹³⁶ 이와 관련하여 사형의 경우 사형집행문건과 판결서 등본을 받은 사회안전기관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1999년 형사소송법 제296조), 공개처형의 경우 이러한 집행문건을 낭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2가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공개처형 이전 이들 피집행자들에 대한 형사처리절차에 대해 좀 더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재판소 판사인지는 아니면 재판소 명

¹³³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¹³⁴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4월.

¹³⁵ 새터민 윤○○,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4월 29일; 새터민 현○○,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3월 11일.

¹³⁶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2월 19일.

의로 인민보안원이 현지공개재판을 조직하여 운영하는지 등 현지공개재판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지공개 재판과 관련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재판소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시·군급 단위의 재판소 건물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자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재판소 건물이 아닌 다른 일반 건물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소 건물이 작아서 사람이 참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혼재판의 경우 사람이 참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판소 건물의 판사방에서 진행된다고 한다.¹³⁷ 새터민 이○○은 2004년 1월 인신매매 혐의자를 재판할 때 본인이 증인으로 참석하였는데, 재판소가 아닌 신의주 신원동에 소재한 건물에서 재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재판에서 피고는 로동교화 3년형을 언도받았다고 한다.¹³⁸ 반면 재판소 건물의 협소 문제를 부인하면서 일반적으로 재판은 재판소에서 진행하고 현지공개재판은 현장에서 진행된다는 증언도 있다.¹³⁹

¹³⁷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2월 19일 김○○은 세천탄광회관에서 재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새터민 현○○,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3월 11일. 현○○은 온성군의 경우 문화회관에서 주로 재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4월 22일;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3월 11일.

¹³⁸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3월 11일.

¹³⁹ 새터민 윤○○,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4월 19일;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0일.

3. 강제노동 적용 실태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로동단련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2004년 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형법에 공식적으로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이 다른 법률 규정을 통해 사실상의 처벌 형태로 집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2가지 처벌과 로동단련형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검찰감시법에는 검사는 범위반 행위를 바로 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로동단련 또는 구금처벌을 할 경우”(제40조 3항)를 들고 있다. 이 규정에서 보듯이 검사는 법 위반자에 대해 ‘로동단련’의 처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판결판정집행법에도 로동단련과 무보수 노동에 대한 규정이 있다. 먼저, 재판소가 집행을 중지 또는 정지하는 판정을 하는 사유의 하나로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자가 중병에 걸려있거나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일 경우”(판결판정집행법 제18조 3항)를 들고 있다. 또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기각하는 사유의 하나로 “로동교화형,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제22조 1항)를 들고 있다. 그리고 로동단련, 무보수노동을 적용하는 판정의 집행은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에 판정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보내도록 규정(판결판정집행법 제43조)하고 있다. 그런데 판결판정집행법은 재판소가 내린 판결, 판정을 정확히 집행(제1조)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로동단련’과 ‘무보수 로동’ 처벌에 대한 집행이

판결판정집행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볼 때 ‘로동단련’과 ‘무보수로동’은 재판소의 ‘판정방식’으로 처벌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형법에 로동단련형이 제정되기 이전 북한의 검찰감시법, 판결판정집행법에는 ‘로동단련’과 ‘무보수로동’이라는 2가지 처벌 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감시법, 판결판정집행법에는 검사와 재판소가 ‘로동단련’의 처벌을 정하도록 중복되는 측면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면 2004년 형법 개정 이전 로동단련의 처벌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었는가? 새터민들은 집단 수용 생활을 하면서 규율과 노동이라는 강제적 방법의 처벌을 집행하는 ‘로동단련대’의 존재에 대해 공통으로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로동단련’의 처벌은 로동단련대를 통한 강제노동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동단련대에 대해 증언하는 새터민들은 일관되게 로동단련대에 수감하는 로동단련의 처벌 시에는 공민증이 유지되어 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행증 없이 통행하다 적발된 경우, 강제송환된 탈북자를 포함하여 자기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른 시, 군, 구역 그리고 도에서 적발되어 처벌 받는 경우 거주지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집결소’에 수감되는데, 여기서도 강제노동을 통한 교양은 실시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새터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시·군·구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로동단련대와 별도로 탈북자들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교양소가 존재한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로동단련대가 아닌 탈북자 전담 교양소에 보낼 경우 인민보안서장이 어떤 사람에 대해 교양소 몇 년을 보내려고 한다고 보고하면 시·군 안전위원회에서 비준을 거쳐 결정된다고 한다.¹⁴⁰ 이러한 증언에서 보듯이 교양소의 존재와 교양소 수감 처벌

¹⁴⁰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21일.

결정과정에서 안전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앞으로 사실 여부를 보다 확인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보수 노동’은 산림 불법 도벌, 불법 도축, 기업소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내리는 행정처벌의 한 형태로 판단된다. 노동단련의 처벌과는 달리 구금 상태에서 노동을 통하여 교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가장 힘든 부분에서 출퇴근 하면서 노동을 하는 처벌 방식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다른 힘든 노동 직종에서 노동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인정하여 배급은 주지만 로임을 주지 않는 처벌이라고 한다. 노동단련과 마찬가지로 공민권은 유지되는 처벌이다.¹⁴¹

그런데 이러한 노동단련과 무보수노동의 처벌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에 규정된 대로 검찰소와 재판소가 아니라 인민보안기관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처벌을 결정한다는 것이 새터민들의 일반적인 증언이다. 특히 노동단련의 처벌은 실제로 인민보안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새터민들의 증언대로 노동단련 처벌을 인민보안기관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단속법이 근거로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회안전단속법에는 다양한 위법행위들에 대한 단속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사회안전단속법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해 인민보안기관이 처벌의 하나로 노동단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이다. 예를 들면 사회안전단속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거나 정해진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노동행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제13조)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터민 장○은 기업소에서 출

¹⁴¹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퇴근 정형에 대해 해당 분주소 보안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담당 보안원은 출퇴근 정형을 취합해서 1달 이상 무단 결근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취합·작성하여 시(구역)·군 인민보안서 감찰과에 보고한다고 한다. 감찰과 부과장이 자료를 접수하여 처리문건을 작성하여 감찰과장과 협의하고 감찰과장이 최종적으로 보안서장으로부터 승인(수표)를 받아 처벌을 시행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감찰과 부과장이 실질적인 처벌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사회안전단속법에 “려행질서, 걸어다니는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터민 장○은 무단결근의 처리 방식대로 담당 보안원이 자료를 취합해서 감찰과 부과장이 문건을 작성→감찰과장과 협의→감찰과장이 보안서장의 수표를 받아 시행하는 처리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식 재판 없이 처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뇌물을 주면 노동단련대장이 보안서 감찰과와 협의하여 구류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한다.¹⁴² 이 증언은 사회안전단속법에 의하면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처벌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바, 앞으로 지속적인 증언을 통하여 확인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동단련’의 처벌을 받은 경우 로동단련대에 수감되는 데, 새터민들은 일관되게 인민보안서 감찰과가 로동단련대를 관할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보위부원 새터민 윤○○도 사회질서 위반 시 로동단련대에 수감되는데 인민보안기관에서 결정한다고 증언하였다.¹⁴³

인민보안기관이 로동단련의 처벌을 결정한다는 또 다른 증거는 후

¹⁴² 새터민 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2일.

¹⁴³ 새터민 윤○○,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4월 19일.

슬하듯이 송환된 탈북자들의 처벌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송환 즉시 시군보위부에서 정치적 성격의 범죄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받은 이후 단순한 월경이라고 판정될 경우 인민보안서로 이관하고 인민보안서에서 로동단련대에 수감시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반면, 무보수 로동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로동단련과 무보수로동의 처벌결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2004년 개정된 형법에서 신설된 ‘로동단련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로동단련’ 및 ‘무보수 로동’과의 연관성이 주요 조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장소’에 보내 노동을 시키되 공민권을 유지한다는 로동단련형의 규정을 놓고 볼 때 기존의 로동단련대로 보내지던 위법행위의 처벌이 상당부분 로동단련형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2004년 개정 형법 중 로동단련형이 규정된 범죄규정과 사회안전단속법이 단속 대상으로 하는 위법행위 중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비교하면 <표 V-1>과 같다.

<표 V-1> 사회안전단속법 단속대상과 로동관련형 적용 범죄 유사조항 비교

사회안전단속법	2004년 형법
사회질서 문란 행위 (8조)	-
국가의 정치적 안전 위험 행위 (9조)	-
설비, 원료, 자재, 생산물의 부실 관리, 유용, 낭비, 불법처분, 계획허위보고, 수출입질서 위반 행위 (10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을 거짓 보고한 죄 (128조) 계획에 없는 제품 생산, 건설죄 (132조) 비법적인 경제관리죄 (134조) 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유용, 낭비, 사장죄 (136조) * 수출입질서 위반죄 (117조, 5년이하 로동교화형)
상품 불법판매행위 등 상업질서위반 행위 (11조)	개인 상적 행위죄 (110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적 행위죄 (111조) 법인으로 가장하여 경제거래를 한자 (112조) 거간죄 (114조) 가격사업질서 위반죄 (170조)
외화벌이, 외환관리질서 위반행위 (12조)	외국화폐매매죄 (104조)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죄 (107조) 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한 죄 (125조) 비법적으로 외환원천을 동원한 죄 (126조)
무단결근, 노동시간 미준수 등 노동행정질서 위반 행위 (13조)	3장 4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 7개조 항 모두 로동관련형이 규정되어 있음.
퇴폐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녹음물의 불법적 유입, 복사, 유포행위 (14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193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194조) 적대방송 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보관, 류포죄 (195조)
패싸움, 공공시설물 파손 등 사회공중질서 위반 행위 (15조)	불량자 행위 (258조) 패싸움죄 (259조)
불법의료 및 약품판매행위 (16조)	불량의약품, 의리기구 생산죄 (210조) 비법의료죄 (211조) 가짜 의약품, 식료품 제조, 판매죄 (215조)
여행질서, 도보질서 위반행위 (17조)	-

사회안전단속법	2004년 형법
기밀자료와 인쇄설비의 보관, 이용질서 위반 및 기밀누설행위 (18조)	과실적 비밀누설죄 (231조) 출판질서 위반죄 (226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경비질서 위반행위 (19조)	-
공민등록, 숙박등록, 살림집 이용질서 위반행위 (20조)	-
교통안전질서 위반행위 (21조)	-
불법 도로건설, 교통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행위 (22조)	-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화재 방지 시설 미비, 불법으로 건물과 시설물 건설, 이용 행위 (23조)	-
화약류, 총기류, 방사성 및 독성물질의 취급질서 위반 행위 (24조)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과실적 손실죄 (76조) 군수품 잃어버린 죄 (79조) 군수품을 팔고 산 죄 (87조)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물질 수송질서위반죄 (227조) 폭발물 비법휴대, 사용, 양도죄 (229조)
내압설비, 사람이 타는 권양설비, 나룻배를 검사받지 않거나 운영질서 위반행위 (25조)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 주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죄 (120조) 운수수단 리용질서 위반죄 (122조)
큰물피해, 지진피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 (26조)	-
불법 동식물 포획 및 채취, 토지남용, 산림 도벌, 오염행위 등 국토관리, 환경보호질서 위반 행위 (27조)	3장 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토지남용, 폐경죄 (173조) 지하자원 개발 및 채굴질서 위반죄 (175조) 금 채취, 제련죄 (176조) 산림조성, 보호 이용질서위반죄 (177조) 산림남조벌죄 (178조) 산을 개간한 죄 (180조) 수산 및 동식물자원 보호관리질서위반죄 (181조) 환경보호질서위반죄 (182조) 하천관리질서위반죄 (183조) 도로관리질서위반죄 (183조)

사회안전단속법	2004년 형법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국민의 헌법적 권리, 생명재산 침해 행위 (28조)	국가재산 훔친 죄 (89조) 국가재산 빼앗은 죄 (90조) 국가재산 속여 가진 죄 (92조) 국가재산 횡령죄 (93조) 국가재산 공동탐오죄 (96조) 국가재산 과실적 파손죄 (98조) 재산의 부패, 변질, 류실죄 (137조) 설비, 물자, 자재의 비법 처분, 취득죄 (138조) 국가재산을 략취하여 기관에 넘겨준 죄 (139조) * 제9장이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임 정당방위 초과 중상해죄 (285조) 과실적 중상해죄 (286조) 고의적 경상해죄 (287조) 폭행죄 (288조) 비법자유구속죄 (291조) 모욕 및 명예훼손죄 (292조)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294조) 개인재산 훔친 죄 (296조) 개인재산 빼앗은 죄 (297조) 개인재산 공갈죄 (298조) 개인재산 속여 가진 죄 (299조) 개인재산 횡령죄 (300조) 개인재산 고의적 파괴죄 (303조)

구체적으로 로동단련대의 경우 1개월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감되어 노동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증언이다. 그런데, 로동단련형의 경우 6개월에서 2년까지로 기간이 훨씬 길다. 이런 점에서 로동단련형을 신설한 것은 경제난으로 급증하고 있는 일탈 행위에 대해 모두 로동교화소로 보내기에는 수용 시설과 기업소 등 단체의 운영 등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적 틀을 활용하되 좀 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일탈행위를 줄여보려는 조치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사회안전단속법에는 인민보안기관이 처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로동단련형은 다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로 수사·예심→기소→재판의 형사처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현실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될지 지속적으로 증거수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장소’에 보내 노동을 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장소에는 노동단련대, 집결소, 교양소 이외에 무보수 노동의 경우처럼 공장이나 농장, 광산 등도 포함될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¹⁴⁴

또한 형법과 사회안전단속법간의 모호한 경계가 문제시될 수 있으며, 형법 개정에 따른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안전단속법을 개정할 지 여부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형법에 새롭게 규정된 노동단련 형이 실제로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미한 일탈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경우는 형법 개정 전의 예에 따라 ‘무보수 노동’ 처분이 계속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¹⁴⁵

¹⁴⁴ ‘일정한 장소’의 문제: 노동단련대 이외에 공장이나 농장, 광산 등에서도 노동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윤대규, “북한 형법의 동향과 평가.”

¹⁴⁵ 위의 글.

VI

결론: 평가 및 향후 과제

보위부에서 형사처리과정에 관여하였던 새터민 이○○의 증언대로 북한에서는 법의 기능에 대해 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보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므로 여전히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있는 사회이다.¹⁴⁶ 헌법 이외에 형법,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상위규범으로 작용하는 주체사상, 김일성 교시, 김정일 방침, 조선노동당의 혁명노선과 결정 등이 존재하여 왔다. 또한 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의 임무와 관련하여 당에 대한 충성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당의 통제가 법 부문에서도 투영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북한은 법의 사회라기보다는 정치의 사회라는 측면이 압도적으로 강한 사회였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성상 사회를 규율하는 입법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였으며 법의 공백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다양한 유사사법 기제들이 작동되어 왔다. 또한 형법상으로 볼 때 그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유추해석을 적용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북한은 대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형법, 형사소송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형법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호사법, 검찰감시법, 판결관정집행법 등을 채택·개정하여 오고 있다. 그렇다면 형사처리 절차라는 기준에서 볼 때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적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와의 연관 속에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과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북한은 체제 내 변화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내외

¹⁴⁶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0일.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형사처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첫째, 형사 관련 법률상으로 정치적 색채를 완화하고 형사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2004년 형법의 사명에 대해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라고 하여 정치적 색채 대신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개정하였다. 2004년 형사소송법도 ‘범죄와의 투쟁을 통한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보위’라는 정치적 목적을 삭제하고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형사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사명을 재정립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재판소구성법도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던 조항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둘째, 자의적 해석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추해석 조항을 삭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형법상으로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형사처리 과정에서 자의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범죄조항을 대폭 확대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이 감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형사처리 과정에서의 인권과 공정성, 법에 규정된 절차, 방법의 준수를 규정하는 등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제8조)고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와 방법의 준수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현 단계에서 체제 내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된다.

첫째, 정치에 대한 법의 종속이라는 기본 인식 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주의헌법상의 노동당의 영도가 명문화되어 있는 바, 사법정책 전반에 대한 당의 통제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상으로 정치적 색채를 띠는 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하였지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보위라는 사명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견지함으로써 형사처리 과정에서 정치의 영향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사처리 과정에서 계급노선이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형사처리의 근간으로 작용하는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구분하는 정책이 여전히 견지되고 있다. 정치범죄와 일반범죄의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인식은 관할과 처벌에서도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급노선이 형사 관련 법제에 그대로 명문화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형법과 공식적인 사법기관 이외에 형사처리 절차에 관여하면서 영향을 행사하는 유사사법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조직들은 사회주의헌법, 검찰감시법 등 공식 법률에도 규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전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동지심판회 등이 형사처리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상의 요인들은 형사처리과정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이 근본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정 등의 이유로 포고문 등이 실질적인 형사처리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증언에서 보듯이 법률 이외에 형사처리 절차에 활용되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안전위원회가 당의 영도와 당 정책 구현을 위해 형사처리 과정에서 구속, 재판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태파악과 관련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리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새터민의 절대부족으로 실태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형사처리 실태에 대해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부 새터민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실태를 기술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한계를 바탕으로 형사처리 전체상을 밝히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처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한정된 증언으로 인해 사실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범죄의 경우 형사조항 자체의 인권침해 여부를 떠나 어느 정도 처리 절차가 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범죄의 경우 형사처리 절차에서 법조항과 괴리가 발견되고 있다. 수사·예심 단계에서 형식적 절차는 준수한다고 보우무원 출신들은 증언하고 있지만 보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치범죄의 경우 재판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축적 차원에서 앞으로 형사처리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형사처리 관련 법 조항의 반인권적 요소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실태조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리 절차에 내재된 반인권적 요소를 병행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문에서 일부 분석한 형사처리 절차 자체 문제점과 실태분석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죄형법정주의를 법률상으로는 사실상 수용하였지만 실제 형

사처리 과정에서 실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개정형법에서 로동단련형을 새로운 형벌로 도입하고 있는 바, ‘로동 단련’, ‘무보수 로동’ 등 기존의 처벌과의 연관성 속에서 실행 실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로동단련형의 경우 인민보안기관이 처벌을 결정하였던 기존의 로동단련대와 달리 수사·예심→기소→재판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2004년 개정 이후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동단련형 적용의 지역별 편차가 주요 분석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¹⁴⁷ 특히 함경북도 등 탈북자들의 송환이 많은 지역에서도 로동단련형에 해당할 경우 재판까지 거치면서 형사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률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에 여전히 일반범죄에 대해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고 법적제재를 배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회적 교양처분과 법적 제재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며, 정치적 요소의 영향이 투영될 여지가 높다. 또한 그 동안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과 관련하여 계급노선, 군중노선이 형사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 및 구체적 사례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급노선에 따라 사회적 교화를 중심으로 범죄를 처리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가족 내 당원 수 등 성분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새터

¹⁴⁷ 남포의 보위부원 출신의 새터민 이○○은 탈북자의 송환이 많은 국경지방과 남포 등 내륙지방은 여건이 달라 처리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0일.

민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형사처리 과정에서 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동지심판회 등 법률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유사사법기관들의 구체적 역할과 실태를 조사하여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구속처분이나 재판과정에서도 안전위원회가 관여한다는 증언이 있는 바, 형사처리 과정에서 안전위원회의 구체적 기능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 처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동지심판회의 역할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현지공개재판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으로 현지공개재판시 폭로 규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지공개재판의 결정과정, 재판과정 등이 조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지공개재판 조항과 공개처형과의 연관성 여부도 중요한 실태조사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처형 이전 현장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전체과정의 정확한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검사와 판사 출신의 새터민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기소, 논고와 변론 등 재판단계의 실태, 인민참심원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소와 재판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피소와 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새터민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터민들이 주로 지방출신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리 적용실태 조사과정에서 중앙차원에서의 처리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항의와 상소, 비

상상소와 재심 등 중앙 차원에서의 형사처리 과정에 대한 실태 파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듯이 앞으로 중앙 차원에서의 실태 부분이 밝혀져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철도, 군사부문 등 특별관할 대상 형사처리 절차에 대한 실태는 거의 조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치범죄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의 관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정치범죄의 형사처리 과정에 대한 실태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구체적 형사처리 단계별·분야별 실태조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구속처분, 자택구속 처분 등 구속처분 실태 및 구속 처분 이전의 인신 구속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집행유예 처분에 대해 노동을 통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유예 집행 실태도 조사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구금과 관련하여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체포, 구속처분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준다”(제182조)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신설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항이 일반범죄를 포함하여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던 정치범의 실종에 대한 가족의 통지에도 적용될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적용실태와 형사처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향후 과제를 토대로 인권개선을 위한 방향을 간략하게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형사법상 반인권적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되 구체적 조

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형법,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등의 구체적 조문별로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사안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 조문에 대한 개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최종검토의견서에서 형법 제10조 유추해석 조항의 삭제와 죄형법정주의 채택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는 죄형법정주의의 채택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유추해석 조항을 삭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구분하는 정책의 폐지를 목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의 삭제를 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인권적 조항인 ‘현지공재재판’ 제도를 폐지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조항에서 재판참가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처리 절차에서 심각한 반인권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태를 중심으로 인권개선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형사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판결·판정집행법, 검찰감시법, 변호사법 등에 규정된 구체적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토대로 인권개선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반인권적 공개처형의 경우 형법에는 5개 조항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새터민들이 증언하는 공개처형 피해자 대부분이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형법, 형사소송법에 없으면서 다른 법률에 보이는 로동단련, 무보수 로동의 처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개선을 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리 실제 운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법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유사사법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사법제도의 구체적 실태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의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규약을 기준으로 북한 법률의 구체적인 조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사실 중심으로 세부실태보고서들이 발간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엮음. 『남북한 법제 비교』.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3.
-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法と司法制度』. 東京: 日本評論社, 1985.
- _____.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刑事法制』. 東京: 社會評論社, 1988.
- _____. 『南北朝鮮の法制定史』. 東京: 社會評論社, 1990.
- 김근식. 『형법학 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_____. 『형법학 2』.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 김영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주시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리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 북한법연구회. 『분단 60년: 북한 법의 어제와 오늘』, 광복 60주년 기념 통일대비 학술대회 논문집, 2005.
- 북한법연구회 편.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5.
-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 서울: 법무부, 1990.
- _____.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 서울: 법무부, 2004.
- _____.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서울: 법무부, 2005.
- 법원행정처. 『북한 사법제도 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 세종연구소 편.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성남: 세종연구소, 1994.
- 심현상. 『조선형법해설-총칙』. 평양: 국립출판사, 1957.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남북한 사법운동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 연구』. 연구 보고서 92-23.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2. 논 문

김일성.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국, 사법일군들 회의에서 한 연설, 1958년 4월 28일).”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대하여 (조선중앙로동당 제4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수.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 『북한법률행정논총』 제7집. 1989.

_____. “구소련 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북한법률논총』 제9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_____. “북한 형법상 형사정책의 방향과 그 변천,” 『북한법률행정논총』. 제10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_____.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_____.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사회안전일군들을 키워내자 (창립 45돛을 기념하는 사회안전부정치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1월 20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심형일. “사회주의법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위력한 수단.” 『근로자』. 1985년

- 제11호 (통권 523호). 평양: 근로자사, 1985.
- 조병천. “공화국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위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1권 제1호. 1995.
- 최종일.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비교.”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7집. 1990.
- 한인섭. “북한형법 반세기.”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편. 『북한법 50년-그 동향과 전망』. 1999.

3. 기타자료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Keys』.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 새터민 증언.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여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중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대응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흙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